

충청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17. 11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김 응 규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충청남도는 전국 수위의 축산업 지역으로 많은 축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가 소규모·고령화 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충남도 내 16,926호의 축사 가운데, 9,461호(55.9%)가 무허가축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은 2018년 3월 24일을 기한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남도 내 많은 무허가축사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 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업 종사자 등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충남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초청교육 및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충남도 및 지자체의 노력, 타 지역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해, 충남도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구모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추진과제를 모아 본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 충남도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바쁜 시간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연구모임 회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년 11월

충남도의회 김 응 규

구분	성명	소속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성겸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김기웅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이원행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장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김경태	한돈협회 아산지부장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강정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기타	유예나	충남연구원 연구원

Contents

제1장 연구모임 등록	3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3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4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5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11
1. 제1차 연구모임	13
① 제1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15
② 제1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보고	29
2. 제2차 연구모임	37
① 제2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39
② 제2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보고	49
3. 제3차 연구모임	59
① 제3차 연구모임(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회의자료	61
② 제3차 연구모임(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결과보고	110
4. 제4차 연구모임	129
① 제4차 연구모임 개최계획	131
② 제4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보고	135
제3장 지원방안 연구보고	14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5
2. 충남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147
3.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점 및 주요 내용	156
4. 충남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 구상	161

I.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제1장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 모 임 명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 대 표 자 : 김 응 규

○ 연구목적 :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 이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축종별, 유형별 적법화 대안을 제시하여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구 성 원 : 18 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간 사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회 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정규재	충남도청 농촌마을지원과 과장		
회 원	오형수	충남도청 축산과 과장		
회 원	고일환	충남도청 환경정책과 과장		
회 원	이돈규	충남도청 산림녹지과 과장		
회 원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 회장		
회 원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회 원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회 원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회 원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6년 9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위원 김응규 (인)

충청남도의회의회장 귀하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 표 자		김 응 규 의원
연구 내 용	과 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산업의 활성화
	목 적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 이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축종별, 유형별 적법화 대안을 제시하여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연구활동기간		2016. 9. ~ 2017. 11.(14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구 활동비	소요액	8,000천원
	산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

※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9 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응규 (인)

충청남도의회회의장 귀하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2016. 9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내 무허가축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2018년 3월 24일 이전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고 축사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축산업을 확보, 지역민원 해결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음.
- 연구모임 회원 상호간 연구 및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매칭 및 연구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1. 추진방향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방안 도출
- 연구과제를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활동
 -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도 15개 시·군 중심으로 연구
- 연구과제 중 일부는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용역 시행
- 연구 성과를 도정 및 일선 시·군에 반영 유도하고 보고서 발간·정보공유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무허가축사
- 사업기간 : 2016년 9월~2017년 11월(14개월)
- 사업내용
 - 도내 무허가축사 유형별 현황파악 및 관리실태 점검
 - 무허가축사 현장방문
 -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현장방문 등
 -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사업비 : 8,000천원

3. 세부 사업계획

【1】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방안
- 관련분야 : 농업정책, 환경관리, 건축도시, 산림환경, 축산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정기모임
- 사업비 : 1,100천원

【2】무허가축사 실태 파악

- 사업개요 : 도내 무허가축사 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
- 사업대상 : 도내 15개 시·군 무허가축사

구 분	14개 시·군	아산시
중점 연구 무허가축사	무허가축사	무허가축사

- 사업내용
 - 도내 무허가축사 축종별 유형별 현황파악
 - 불법건축물 건축법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 산림형질변경 위반 적법화가능 기준 제시 등 불법사항적법화 기준제시
- 사업비 : 1,150천원

【3】중앙부처 전문가 초청교육

- 사업개요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 사업내용
 -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기준 상세설명과 교재 배부
- 사업비 : 1,300천원

【4】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개요 :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 사업비 : 2,950천원

【5】발간보고서·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실질적 정책대안과 축산농가의 활용방안
- 사업비 : 1,500천원

4.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16. 9월중)
-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실시(16. 11월중)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 무허가축사 적법화교육(17. 3월중)
- 무허가축산농가 현장방문(17. 5월중)
 - 방문지역 : 천안시, 안산시, 홍성군

- 연구모임 제1차 간담회(17. 6월중)
- 정책토론회 개최(17. 7월중)
-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17. 9월중)
- 보고서 발간 및 배포(17. 11월중)

5. 기대효과

- 무허가축사의 불법사항을 적법하게 적법화 시켜줌으로써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
-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어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로 연구하는 도의회 만들기 성과 창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8,000	
연구모임 활 동 비	1,100	○ 연구모임 발족 및 연구회 - 25,000원×18명=450,000원 ○ 전문가 참석수당 - 100,000원×6명=600,000원 ○ 현수막 외 : 50,000원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1,150	○ 현장방문 - 25,000원×18명=450,000원 ○ 전문가 참석수당 - 100,000원×6명=600,000원 ○ 기타 : 100,000원
적법화 교육	1,300	○ 전문가 참석수당 - 100,000원×2명=200,000원 ○ 적법화교육 교재 작성 및 배부 - 5,000원×200부=1,000,000원 ○ 현수막 외: 100,000
토론회 개최	2,950	○ 토론회 개최 : 1,000,000원 - 발제 : 300,000원 - 좌장 : 200,0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5명=500,000원 ○ 자료집 발간 : 1,000,000원 - 5,000원×200부=1,000,000원 ○ 식대 : 450,000원 - 25,000원×18명=450,000원 ○ 현수막 외 : 500,000원
보고서 인쇄	1,500	○ 연구과제 보고서 발간 - 30,000원×50부=1,500,000원

Ⅱ.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제1차 연구모임
2. 제2차 연구모임
3. 제3차 연구모임(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4. 제4차 연구모임(현장답사)





1. 제1차 연구모임

① 제1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2016. 11. 7 (월)
아산시청 별관 회의실(1층)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식 및 제1차 회의자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지역민원해결과 쾌적한 축산업 확보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1. 추진방향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방안 도출
-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활동
 - 아산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심으로 연구
- 연구 성과를 도정 및 일선 시·군에 반영 유도하고 보고서 발간·정보공유

2. 회원현황 : 총19명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5454-4040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010-6662-4746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5425-0259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5427-6570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6421-4488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5425-3386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3472-1253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4428-7711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10-2014-7800
	정규재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010-3465-0234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010-8753-1937
	고일환	충청남도 환경정책과장	010-6417-3308
	이돈규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010-5428-5785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10-8951-4261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회장	010-3456-5109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010-5431-0209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010-8813-1483
	지덕한	덕연농장 대표	010-8802-9463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010-5450-6863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무허가 축사
- 사업기간 : 2016년 9월~2017년 11월(14개월)
- 사업내용
 - 도내 무허가축사 유형별 현황파악 및 관리실태 점검
 - 무허가축사 현장방문
 -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교육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4. 도내 무허가축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제도개선 미비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환경부 규제강화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폐쇄·가축사육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그동안 추진상황

중앙
부처
차원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3.5.31, '15.4.27, '16.2.12)
 -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 포함 등 적용확대 등
- 가축분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3.24, '15.3.24, 3.25)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등
 - * 사육중지명령,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을 축종별·규모별 단계적 집행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2015.11.11)
 -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 제도개선 사항, 방안·절차 설명
- 기타 제도개선사항
 -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2018.3.24.까지)
 -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거리제한 이격거리를 축소, 농가편의 도모)

지자
체
차원

- 축사 전수조사 실시(붙임 1)
 - 축사 16,926농가 중 무허가 축사 9,461농가(55.9%)
 - 소 7,369(77.9%) > 닭·오리 932(9.9%) > 돼지 710(7.5%) > 기타 450(4.7%)
 - 2016. 10월 현재 도내 186농가 적법화 완료(진도율 2%, 붙임 2)
- 시·군별 지자체 건축법 조례개정*(붙임 3)
 - 11개 시·군 개정, 4개 시·군 미개정 → 조례 개정한 내역을 공유하여 전체 시·군 조례개정 유도
 - * 이행강제금 적용율 축소(60%~최대100% → 60%~90%) 등
- 출하대 지원사업관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 개정 건의
 - 배출시설에 포함시킨 출하대를 방역시설로 지정 요청
 - ∴ 배출시설로 규정시, 처리시설 증축필요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출하대 설치 불가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농가
내적
문제

- 축사적법화 추진 비용 소요(농가당 약 500백만원)
- 측량비, 설계비 및 이행강제금 부담
- 성공원 등 축사밀집 지역, 건폐율 적용 곤란
- 건폐율을 60%로 상향했어도 축사 밀집지역, 건폐율 적용애로
-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된 축사
- 타인 토지, 지적도상 적법화 불가능한 지점에 건축된 축사(구거, 도로 등)

농가
외적
문제

- 비축산 농가의 축사확장 반대 주장
- 악취발생 등으로 무허가 축사 철거요청에 반하는 적법화 추진 반대
- 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추진에 대한 이견
- 건축법 및 환경법을 준수한 축산농가들의 상대적인 불만*
 - *범법자들에 대한 건폐율 상향조정 및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
- 민선 자치단체장 등의 축산농가 및 비축산농가에 대한 이해상충
- 축산 찬성 목소리보다 축산 반대 목소리의 상대적·시대적 흐름

5.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방안
- 관련분야 : 농업정책, 환경관리, 건축도시, 산림환경, 축산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정기모임

2) 무허가축사 실태 파악

- 사업개요 : 도내 무허가축사 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
- 사업대상 : 도내 15개 시·군 무허가축사
- 사업내용
 - 도내 무허가축사 축종별 유형별 현황파악
 - 불법건축물 건축법 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 산림형질변경 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등 불법사항 적법화 기준 제시

3)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교육

- 사업개요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 사업내용
 -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기준 상세설명과 교재 배부

4)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개요 :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5) 발간보고서·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실질적 정책대안과 축산농가의 활용방안

6. 사업 추진일정

○ 연구모임 1차 회의(16. 11월중)

○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실시(16. 11월중)

○ 연구모임 제2차 회의(16. 12월중)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 무허가축사 적법화교육(17. 3월중)

○ 무허가축산농가 현장방문(17. 5월중)

- 방문지역 :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 정책토론회 개최(17. 7월중)

○ 보고서 발간 및 배포(17. 11월중)

7. 기대성과

○ 무허가축사의 불법사항을 적법화 시켜줌으로써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

○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어 축산업 활성화 도모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로 연구하는 도의회 만들기 성과 창출.

붙임 1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전수조사 결과

구 분	축사현황	무허가축사현황	무허가 비율	비고
계	16,926	9,461	55.9	
천안시	778	492	63.2	
공주시	2,367	1,164	49.2	
보령시	1,146	675	58.9	
아산시	724	567	78.3	
서산시	1,245	624	50.1	
논산시	1,012	458	45.3	
계룡시	23	10	43.5	
당진시	1,385	904	65.3	
금산군	385	183	47.5	
부여군	1,345	689	51.2	
서천군	506	215	42.5	
청양군	1,176	522	44.4	
홍성군	2,550	1,634	64.1	
예산군	1,766	1,025	58.0	
태안군	518	299	57.7	

붙임 2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구분	무허가 축 사	적법화 추진			적법화 추진율	비고
		상담	추진중	완료		
계	9,461	4,095	740	186	2.0%	
천안	492	78	117	11	2.2	
공주	1,164	505	10	3	0.3	
보령	675	600	60	13	1.9	
아산	567	100	1	1	0.2	
서산	624	500	30	0	0	
논산	458	450	10	9	2.0	
계룡	10	7	3	0	0	
당진	904	162	14	37	4.1	
금산	183	283	180	3	1.6	
부여	689	200	10	4	0.6	
서천	215	80	15	4	1.9	
청양	522	170	80	2	0.4	
홍성	1,634	260	50	69	4.2	
예산	1,025	600	100	30	2.9	
태안	299	100	60	0	0	

붙임 3**시·군별 건축조례 개정 등 조치내역**

사군	조치내역	비고
천안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1.5m) ※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2018.3.24.까지 대지안의 공지 미적용	
공주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0.5m)	
보령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0.5m) ▶ 이행강제금 조정 - 위반종류에 따른 70~100% → 60%로 일괄 하향	
아산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1.0m) ▶ 이행강제금 조정 - 위반에 따른 비율 70%~100% → 항목별 10% 감	
서산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3m → 1.0m) ▶ 이행강제금 조정 - 용적율 초과 70%, 그 외 위반 일괄 60% 적용	
논산시	없음	
계룡시	없음	
당진시	▶ 대지안의 공지 조정 요청 → 건축과 - 1~6m를 → 1m로 축산부서에서 건축부서 요청	
금산군	▶ 이행강제금 조정 - 건폐율 초과 80→70%, 용적율 초과 90→80% 무허가 100→80%, 미신고 70→60% 적용	
부여군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3m → 1m) 예정	
서천군	없음	
청양군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1m 조정 요청	건축부서 회의적
홍성군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0.5m) 예정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에 한해 한시적	
예산군	없음	
태안군	▶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예산 확보 - 군비 50,000천원, 자담 50,000천원 ※ 농가당 최대 1,000천원 지원	

참고
자료

무허가축사 관련 보도자료

무허가축사 적법화 2024년까지 3단계로 순차 진행농식품부 “기존 가축분뇨법
부칙에 있던 내용 확정 발표한 것”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6.10.21 16:23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정부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가운데 6만190호가 적법화 실시 대상으로 집계됐다. 한우·젖소가 5만2,469호로 (87.2%)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를 축사의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 9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축종·단계별 기준과 농가수를 확정 발표한 것이어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소 71두 이상, 돼지 760두 이상, 닭·오리 2만수 이상) 2만384호는 기존에 예정됐던 2018년 3월 24일, 2단계 대상 농가 4,312호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 대상 농가(소 57두 미만, 돼지 506두 미만, 닭·오리 1만2,000수 미만) 3만5,494호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면 된다. 사실상 전업농 대부분은 2018년까지 적법화를 마무리 지어야하는 상황.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을 매월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로 확인하고 대상농가의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우수사계 워크숍을 개최해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을 공유할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적법화 추진방안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무허가축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사 절반 무허가… 2024년까지 개선

가축분뇨법 등 기준 미달 농립부, 순차 적법화 추진

전국 축사 10곳 중 5곳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규모가 큰 축사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상 축사 허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만 6000 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만 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됐다. 축사 종류별로 보면 한우·젖소 농가가 5만 2469호(87.2%)로 가장 많았고, 닭·오리(7.6%), 돼지(5.2%) 농가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거나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다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일부 정화시설 등을 갖추고도 축사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면 해당 축사에서 분뇨처리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 및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2만 384호, 2단계로 2019년 3월까지 4312호, 2024년까지 3만 5494호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건축법상 건폐율 조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들이 현재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연차별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논란 여전...농식품부-축산단체 간담회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bs@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축사를 대상으로 무허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적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 제2축산회관에서 축종별 축산단체장들과 향후 무허가축사 대책을 논의했다.

낙농가 입지제한구역 대책 마련 미흡 문제제기 “무조건 시행보다 시뮬레이션 사전검증” 제안도

이날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다른 데 축산농가 전수 조사를 한 것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하는 농가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별 적법화 대상 농가가 파악됐는데 이 중에서 한우와 젖소 농가가 87%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가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단체장들은 농식품부의 무허가축사 대책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들이 이행강제금 경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축사 1000평에서 5평이 무허가인 경우 무허가 부분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농농가들의 무허가축사 문제는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김봉석 낙농육우협회 전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에 낙농가의 80~90%가 포함된다”며 “그러나 경기도에 절반 정도 위치해 있는데 입지제한 구역에 묶여 근본적으로 적법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지제한 구역 대책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방안이 없다”며 “세정수와 관련해서도 처리 업체가 3~4개 밖에 없고 그렇다고 세정수 처리시설 갖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입지제한 구역 지정이 목장 시작한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 인지 문제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입지제한 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닭과 오리는 무허가 농가가 입식하면 계열업체도 처벌받게 되는데 농가 지도를 하려면 농식품부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2018년 3월 24일 1단계까지 1년6개월도 안 남았는데 시기를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의 무허가축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 무허가축사 시한이 2018년 3월에서 2024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요즘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님은 간척지 축산에 관심이 높다. 대안으로 간척지 조사료단지 만들고 축사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에서도 무허가축사 관련 TF 조직을 유도해 원할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앞장
 시군 지부장 대상 도별 간담회 2주간 실시

[전업농신문]

기사입력(2016-10-27 12:17:26)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시군지부 활동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4일 예산축협에서 충남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도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 축사는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무허가 축사는 이보다 더 많은 60~70%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환경규제로 인해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을 설정해 무허가 축사를 제도권 안으로 진입키 위해 관련법을 정비,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양계협회의 진단이다.

양계협회는 이어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도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무허가축사 양성화 활동지침(메뉴얼)’을 설명하고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 조례 등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2 제1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보고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

창립식 및 1차 회의 결과

축산연구회 1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11. 07 (월) / 17:00 ~ 18:00
- 장 소 : 아산시청 별관 1층 회의실
- 대 상 : 축산연구회 연구모임 구성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1차 회의결과 종합

□ 회의참석자

- 도의원 :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이기철
- 전문위원 : 류재홍, 이완규
- 도청 : 정규재 과장, 오형수, 고일환, 이돈규
- 외부 : 백충현, 서석천, 지덕환, 홍석학, 신우식
- 충남연구원 : 이상준, 최정현

□ 인사말씀 : 김응규 의원님 주재

발제자	발제내용
강용일	▪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김명선	▪ 무허가 축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문규	▪ 축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김복만	▪ 우리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다. ▪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
이기철	▪ 아산시에는 벌써 문제 제기된 축사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필요하다.
류재홍	▪ 연구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정규재	▪ 우리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에 무허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오형수	▪ 기한 내 모든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일환	▪ 환경문제와 양돈 문제가 걸리지만,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돈규	▪ 무허가 축사가 산림 내에도 있는데, 산지관리법 상 기준에 적합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부합되면 구제가 가능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홍석학	▪ 경기도는 벌써 단체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 실증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지덕환	▪ 악취 등 문제가 된다.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석천	▪ 어려운 환경에 처한 축산 농가에 도움이 필요하다.
신우식	▪ 현행 건축법 상 어려움이 있다. ▪ 과거에도 이러한 무허가 해소 노력이 있어서 처리한 경험이 있다. ▪ 그러나 현재는 법이나 지침 상 어려움이 있다. ▪ 그래서, 법이나 지침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부나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백충현	▪ 법이 어렵더라도 농민이 잘 모르기에, 적극 지원 부탁한다.

□ 자료 소개 : 김응규 의원

발제자	발제내용
김응규	▪ 무허가축사 실태 파악 ▪ 무허가축사 축종별 유형별 현황분석 ▪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 연구모임의 결과를 무허가 축사의 불법사항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 내년 11월까지 할 예정이다. ▪ 무허가축사는 소규모로 자본이 부족하다. 장기 저리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실질적으로 연구모임이 환경문제(악취 등)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회의 및 토론

발제자	발제내용
강용일	▪ 신우식 교수님 말씀대로, 양성화는 안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 ▪ 실질적으로는 양성화 지침을 바꿔야 한다.
신우식	▪ 지침을 안 바꿔도 가능할 수 있다. ▪ 불법이 100이면 70정도라도 양성화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강용일	▪ 말로만 양성화지, 양성화 지침은 현실에 안 맞다. ▪ 지침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토론회를 통한 양성화를 위한 법이나 지침을 바꾸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 연구모임이 운영되서 결과가 일정 수준 도출되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 기왕이면 100% 모두 양성화를 위한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신우식	▪ 축사가 다른 사람 경계를 침범하면,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 ▪ 이럴 경우, 경계에 걸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오형수	▪ 9월 26일에서야 양성화도 아닌 적법화로 부처간 협의가 되었다. ▪ 이제야 중앙에서도 태동하는 단계이다. 농식품부 주도 TF팀 구성이 이루어졌다. ▪ 9천 400여 농가가 무허가다. 이것에 대해 도에서도 2달 간 노력해서 187농가가 적

발제자	발제내용
	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경기도와 더불어 충남도 TF팀을 구성하고 있다. - 필요한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돈규	- 작년 11월에 농식품부 주관 국토부 등이 기준을 만들었을 때, 산림부에서는 허가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축사에 한해서는 7년이 지나면 복구비 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산리관리법 상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축사는 복구비 면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 - 물론 타법(용도 등)에 저촉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정규재	농지도 축사 부속시설 관련도 농지법이 변경되서, 산림부와 같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고일환	- 약취 및 오페수 등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 - 다음부터는 물관리정책과장이 참여할 것이다. - 물관리정책과장이 와도 환경적인 측면은 적법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김복만	- 어려운 문제다. 잘 풀렸으면 한다. - 기존 시설이 이루어지고 법이 나중에 이루어졌다. 이걸 문제다. - 신우식 교수 등 구성원이 잘 이루어졌다.
김명선	-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평균 3m, 아산 1m)가 상이하다. - 면지역(2m)이나 읍지역(4m)은 진입도로에 대한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 이렇듯 상이한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형수	이러한 기준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신우식	- 건축법 상 관습상 도로는 4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된다. 그래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김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 당진은 주거지에서 축사까지 거리는 최소 1km이다.
오형수	그것은 당진시 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복만	- 주민과 축산농가 간 상당한 문제가 있다. - 이러한 문제가 시군마다 다르다.
백충현	- 아산시는 축종별로 조사는 했다. - 건축사를 축종별로 협의하고 있다. - 신우식 교수가 말한 거리도 문제지만, 남의 토지를 침범한 농가가 많은게 문제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렵다.

발제자	발제내용
	▪ 건폐율 초과 문제도 어렵다. ▪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분뇨처리시설 설치 혹은 분뇨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 ▪ 남의 토지를 임대차해서 축사 건립한 경우, 산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한 것(1980년대)의 경우, 허가 당시에 측량 등이 미흡했는데, 나중에 보니 옆의 토지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
서석철	▪ 양돈의 경우 미생물을 활용하여 저감을 노력하고 있다. ▪ 정부나 도 차원에서 보다 좋은 미생물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 ▪ 현재 사용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 ▪ 농가에서는 약취 저감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 미생물이 안 좋으니 개선이 필요하다.
지덕환	▪ 양계는 약취가 문제다. ▪ 똑부러진 결과는 없다.
강용일	▪ 축산은 약취 처리 및 시설 설치가 문제다. 도나 정부에서도 시설을 하고 있고 지원금도 큰데(일부 30억도 있음) 실효가 없다. ▪ 광역단위나 지자체 단위로 약취를 저감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최대한 지어서 축사 약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떤지? ▪ 개별 농가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선진국 대비 등을 총괄적으로 개별 농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 강원도인가에서는 도차원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는지?
오형수	▪ 알겠습니다. ▪ 축산분뇨가 시군별로 단지와 규모화 되어 있다. ▪ 미생물도 축종별로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 현재 도에서 다양한 맞춤형 약취 제거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 현재 충청도에 18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
홍성학	▪ 허가는 받았는데, 건물 등을 이어 붙여서 사용하는 문제, 창고로 허가 받고 축사로 활용하는 것 등에 대해, 이런 것을 적법화 하는 문제 모색이 필요하다.

3) 참석현황 및 회의사진

(1) 참석현황

구분	성명	소속	참석여부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석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정규재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참석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참석
	김기웅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대리 참석(고일환)
	이원행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대리 참석(이돈규)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장	참석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참석
	김경태	한돈협회 아산지부장	미참석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참석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참석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참석
	강정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미참석
기타	최정현	충남연구원 연구원	참석

(2) 관련기사

충남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위한 활동 돌입

김기룡 기자

승인 2016.11.08

| 연구모임 발족 내년 11월까지 활동... 결과보고서 발간



▲ 김웅규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활동에 돌입, 지역민의 환경 민원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이 최근 아산시청에서 창립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웅규 의원(아산2)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한국농어민신문

HOME 전국

충남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팔 걸었다

김응규 도의원 대표로 연구모임 창립...“규모 큰 축사부터 순차적 유도”

윤광진 기자

승인 2016.11.11 12:55

신문 2865호(2016.11.15) 13면

내년 11월 보고서 발간 계획

충남도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충남도의회 소속 김응규 의원(아산2, 새누리)이 대표를 맡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7일 아산시청에서 창립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에 따라 도내 쾌적한 축산시설과 소득증대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모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근거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축사 절반가량인 47.7%가 무허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상 축사 허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만 6000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만 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됐다. 충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만6926호 가운데 9461호(55.9%)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제2차 연구모임

① 제2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2017. 2. 21 (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회의자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2차 회의 개최

□ 개 요

- 기 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 때 · 곳 : '17. 2. 21(火) 11:00 ~ 12:00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 참 석 : 30명 (연구모임 회원 19, 직원 등 기타 11)
- 회의내용

보고 2017-2-1호) 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회의 2017-2-1호) 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회의 2017-2-2호) 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회의 2017-2-3호) 향후 일정 관련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진행방법	비 고
11:00 ~ 11:05	5'	▶ 인사말씀		김응규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11:05 ~ 11:25	20'	▶ 주요내용 발표	발표	이상준 (연구모임 간사)
11:25 ~ 11:55	30'	▶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	토론 협의	연구모임 구성원
11:55 ~ 12:00	5'	▶ 마무리 말씀		이성일 팀장
12:00 ~		▶ 만찬		

□ 주요 회의 안건

(1) 보고2017-2-1호(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 1차 회의결과 종합

(2) 회의2017-2-1호(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 15개 시·군 축종별 무허가 축사 현황
- 무허가축사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현황

(3) 회의2017-2-2호(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상 중요사항
-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사례집 상 중요사항

(4) 회의2017-2-3호(향후 일정 관련)

- 현장방문 일정
- 워크숍 추진 일정

보고2017-2-1호
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6년 11월 7일(월) / 17:00~18:00
- 장 소 : 아산시청 별관 1층 회의실
- 참 석 자 : 김응규 의원님 외 17명

□ 회의내용
○ 무허가 축사 관련 내용 종합

- 무허가 축사는 소규모로 자본력 등이 부족함
- 아산시 등에서 무허가 축사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산림 지역 내 무허가축사는 ‘산지관리법’ 상 기준에 적합하면 구제 가능(무허가 축사에 한해 7년이 지나면 복구비 면제 등)
- 건축법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국토부 등과 협의 필요
- 9,400여개 무허가 축사가 있으며 이 중 187여개가 적법화 됨
-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아산시와 같은 조례의 개정 등도 필요함

○ 무허가 축사 관련 문제점 사례

- 축사 등이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하는 사례와 관련된 문제
- 축사와 대지 경계선 간 이격 거리 문제(면 지역 2m, 읍 지역 4m)
- 건폐율 초과 문제
- 건물을 이어 붙여 사용하는 문제
- 창고로 허가 받고 축사로 활용하는 문제
- 환경문제(특히 분뇨처리시설 문제)와 양돈, 양계 문제 해결 필요
- 악취 문제 해결 필요

회의2017-2-1호

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회의2017-2-1-1호] 15개 시·군 축종별 무허가 축사 현황

□ 무허가축사 및 적법화 추진 현황

○ 충남도 내 축사는 16,926개소이며 이 중 무허가축사는 9,461개소로 전체의 55.9%로 나타남

- 현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는 총 4,095개소이며, 완료된 것은 186개소로 전체의 2.0%에 수준에 불과함

구 분	축사 및 무허가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비고
	축사	무허가축사		상담	추진중	완료	추진율	
		개소	비율(%)					
계	16,926	9,461	55.9%	4,095	740	186	2.0%	
천안시	778	492	63.2%	78	117	11	2.2%	
공주시	2,367	1,164	49.2%	505	10	3	0.3%	
보령시	1,146	675	58.9%	600	60	13	1.9%	
아산시	724	567	78.3%	100	1	1	0.2%	
서산시	1,245	624	50.1%	500	30	0	0.0%	
논산시	1,012	458	45.3%	450	10	9	2.0%	
계룡시	23	10	43.5%	7	3	0	0.0%	
당진시	1,385	904	65.3%	162	14	37	4.1%	
금산군	385	183	47.5%	283	180	3	1.6%	
부여군	1,345	689	51.2%	200	10	4	0.6%	
서천군	506	215	42.5%	80	15	4	1.9%	
청양군	1,176	522	44.4%	170	80	2	0.4%	
홍성군	2,550	1,634	64.1%	260	50	69	4.2%	
예산군	1,766	1,025	58.0%	600	100	30	2.9%	
태안군	518	299	57.7%	100	60	0	0.0%	

출처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식 및 제1차 회의자료, 2016, pp.9~10. 재구성

[회의]2017-2-1-2호] 무허가축사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현황

□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2014년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이전에는 227건에 불과하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014년 이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2014년 이전에 비해 이후가 210건 정도 증가하였음

- 시·군별로는 당진시가 110건, 홍성군이 38건, 천안시가 32건 증가하였음
- 반면에, 서산시 30건, 서천군은 5건, 보령시·아산시 4건씩 감소하였음

○ 부과금액도 2014년 이전에는 522,438천원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932,033천원으로, 409,595천원이 증가하였음

- 건당 부과금액도 건당 2,872천원에서 3,229천원으로 증가하였음

구분	합계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증감		부과건수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합계	664	1,454,471	227	522,438	437	932,033	210	409,595	2,872	3,229
천안시	44	93,848	6	36,743	38	57,105	32	20,362	6,124	1,503
공주시	70	86,243	24	24,352	46	61,891	22	37,539	1,015	1,345
보령시	38	120,450	21	45,008	17	75,442	-4	30,434	2,143	4,438
아산시	26	191,583	15	45,132	11	146,451	-4	101,319	3,009	13,314
서산시	66	97,446	48	77,372	18	20,075	-30	-57,297	1,612	1,115
논산시	21	25,818	2	1,854	19	23,964	17	22,110	927	1,261
계룡시	7	2,260	4	1,312	3	948	-1	-364	328	316
당진시	160	179,231	25	100,789	135	78,442	110	-22,347	4,032	581
금산군	4	4,369	3	4,146	1	223	-2	-3,923	1,382	223
부여군	15	43,357	2	2,862	13	40,495	11	37,633	1,431	3,115
서천군	7	75,467	6	67,848	1	7,619	-5	-60,229	11,308	7,619
청양군	30	182,977	10	31,990	20	150,987	10	118,997	3,199	7,549
홍성군	150	263,340	56	70,826	94	192,514	38	121,688	1,265	2,048
예산군	25	87,862	5	12,205	20	75,657	15	63,452	2,441	3,783
태안군	1	221	0	0	1	221	1	221		221

출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016.8.22, 내부자료

□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고발 현황

- 2010년 이후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고발은 총 254건이 이루어짐
 -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령시는 1건으로 가장 적음
- 2014년 이전에는 총 152건이며, 2014년 이후에는 102건으로 50건이 감소함
 - 시·군별로는 논산시의 감소폭이 35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천안시가 21건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청양군 6건, 금산군 5건, 공주시 4건 등 8개 시·군에서는 적지만 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구분	합계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증감
합계	254	152	102	-50
천안시	45	33	12	-21
공주시	6	1	5	4
보령시	1	0	1	1
아산시	24	15	9	-6
서산시	21	9	12	3
논산시	47	41	6	-35
계룡시	2	2	0	-2
당진시	31	18	13	-5
금산군	5	0	5	5
부여군	24	13	11	-2
서천군	7	2	5	3
청양군	10	2	8	6
홍성군	16	12	4	-8
예산군	2	0	2	2
태안군	13	4	9	5

출처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고발 건수 현황, 2016.8.24, 내부자료

회의2017-2-2호
무허가축사 문제점 및 조례 개정 현황
☐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점

**정부
차원의
문제점**

- 제도개선 미비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환경부 규제 강화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행정처분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폐쇄·가축사육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구성됨

**농가
차원의
문제점**

- 비용 문제
 -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적법화 추진 비용
 - 농가 당 약 500백만원 소요 예상
-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적용 등 문제
 - 지적도 상 타인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문제
 - 건폐율(60%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문제
- 지역사회 이해, 농가 간 형평성 문제
 - 지역 사회에서의 축사 확장에 대한 반대
 -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

□ 무허가축사 관련 시·군별 무허가축사 관련 건축조례 개정 현황

- 무허가축사에 대부분 이격거리 조정, 이행강제금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태안군의 경우,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비 50백만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됨
- 이격거리 조정은 공지 이격거리를 0.5m~1.0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시함
- 이행강제금 조정은 시·군별로 차이가 큰 편인데, 평균적으로 현행 이행강제금의 60~7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이격거리 조정	이행강제금 조정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
천안시	▪ 5m ⇒ 1.5m		
공주시	▪ 5m ⇒ 0.5m		
보령시	▪ 5m ⇒ 0.5m	▪ 70%~100% ⇒ 60%	
아산시	▪ 5m ⇒ 1.0m	▪ 70%~100% ▪ ⇒ 항목별 10% 경감	
서산시	▪ 3m ⇒ 1.0m	▪ 용적률 초과 70% ▪ 그 외 60%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 1~6m ⇒ 1.0m		
금산군		▪ 건폐율 초과 80 ⇒ 70% ▪ 용적률 초과 90 ⇒ 80% ▪ 무허가100 ⇒ 80% ▪ 미신고 70 ⇒ 60%	
부여군	▪ 3m ⇒ 1.0m		
서천군			
청양군	▪ 1.0m		
홍성군	▪ 5m ⇒ 0.5m		
예산군			
태안군			▪ 농가당 최대 1천만원 ▪ 총예산 1억원(군:자부담=5:5)

출처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식 및 제1차 회의자료, 2016, p.11. 재구성

회의2017-2-3호

향후 일정 관련

□ 3차 정례회의 개최

- 일시 : 2017년 2월 경 추진
- 내용 : 전문가 초청 교육 방안 협의 등

□ 정책토론회 개최

○ 전문가 초청 교육

- 일시 : 2017년 3월 경 추진
- 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에 대한 상세설명 등
- 대상 : 축산환경관리원 관련 전문가 대상

○ 정책 토론회

- 일시 : 2017년 7월 경 추진
- 내용 : 전문가 및 도민, 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대상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 악취 등 축사환경개선 방안 등

□ 무허가축사 실태 파악

○ 현황분석

- 선행연구, 통계자료 등 지속적인 조사 및 분석
- 간사를 맡은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 등과 협의하여 추진

○ 현장방문

- 일시 : 2017년 5월 경 추진 예정
- 대상 :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내 축사

※ 정확한 세부 일정과 장소는 미정므로,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

2 제2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보고



2017. 2. 21 (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회의결과 보고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2차 회의결과 보고서

□ 개 요

- 때 · 곳 : '17. 2. 21(火) 11:00 ~ 12:00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 참 석 : 19명 (연구모임 회원 14, 직원 등 기타 5)
- 회의내용

보고 2017-2-1호) 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회의 2017-2-1호) 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회의 2017-2-2호) 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회의 2017-2-3호) 향후 일정 관련

회의결과

□ 인사말씀

- 김응규 위원장님

□ 회의자료 소개

- 이상준 간사

- 보고 2017-2-1호) 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 회의 2017-2-1호) 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 회의 2017-2-2호) 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 회의 2017-2-3호) 향후 일정 관련

□ 회의 및 토론

- 김복만 의원님

- 일부 지자체처럼, 무허가축사와 관련된 지원기준이 너무 세분화 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
- 농민신문에서, 농협중앙회가 무허가축사 지원단(컨설팅 대전 김용각 건축사 사무소)을 출범시킨 것으로 나온는데, 그 만큼 무허가 문제는 중요한 사항임
- 축산 농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명선 의원님

- 무허가 축산농가 등의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 뿐만 아니라, 충남도 관련부서에서도 “예산”이나 “행정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우 농가 등의 경우, 주택가 인접성, 토지 확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임
- 일부 지자체(당진시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0%로 조정하는 안건을 만들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음

○ 홍재표 의원님

-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축산업이 크게 기여하였음
- 축산업의 문제는 ① 무허가 문제, ② 환경문제, ③ 주민 마찰 문제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12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설건전축물”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적법화”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함
- 무허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내포에서 추진했던 것과 같은 “이주, 이전”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백충현 위원님

- 아산시의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편임
- 소규모 축사의 경우, 법이 일몰될 시점까지 “버티다 그만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편임
- 축산농가가 줄어드는데 적법화가 좋은 것인지 의문임
- 홍재표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은 축산시설이 축소되거나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

○ 김경태 위원님

- 건축사 사무소와도 협약을 하였지만, 버티다가 안되면 그만둔다는 생각이 일부 있어, 현재는 눈치만 보고 있음
- 적법화와 양성화의 문제에서, 본인은 1996년처럼 양성화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양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자체는 이격거리 하나만 부각시키는데, 양돈에서는 “폐수처리”가 더 어렵고 중요함

○ 서석천 위원님

- 아산시 무허가 축산농가의 경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임
- 충남도나 아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홍성학 위원님

- 홍천이나 철원의 경우, 태안군처럼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 지자체에서 측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가설건축물이 80~90%인 축산농가가 매우 많은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이를 60%에 맞추고자 하는 자생적 노력이 필요함
- 우제류나 가금류 등을 구분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행강제금은 일부 지자체(당진시 등)처럼 50%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은 법규 중심이 아닌 “실증사례”를 중심으로 축산농가가 전문가 등에 문의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글을 보고 “문답식”형태로 추진하였으면 좋겠음

○ 강정원 위원님

-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궁금함
- 차라리, 적법화 법규 적용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함

○ 정규재 위원님

- 문제점에 분석은 되었음
- 이제 법과 제도, 행정지원 등을 구분한 “해결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판단됨

○ 김기웅 위원님

- 축산 폐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기준은 ① 소는 500㎡ 이상, 돼지 600㎡ 이상일 경우, 2018년, ② 소는 400~500㎡, 돼지 500~600㎡일 경우, 2019년 이며, 이때 소규모 농가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충남도는 적법화 법 적용 시점이 되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축산농가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축산농가 등의 환경 인식 제고도 필요함

○ 오형수 위원님(축산팀장 대신 참석)

- 축산 부서는 총괄부서로, 과거 양성화와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축산농가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적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충청남도과 지자체에서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참석현황 및 회의사진, 관련기사

(1) 참석현황

구분	성명	소속	참석여부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석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정규재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참석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참석
	김기웅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참석
	이원행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미참석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장	참석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미참석
	김경태	한돈협회 아산지부장	참석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참석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미참석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참석
	강정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참석
기타	유예나	충남연구원 연구원	참석

(2) 회의사진



(3) 관련기사


[로그인/회원가입](#) [회원탈퇴](#)

conqlee@hanmail.net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의원)은 21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내 무허가 축사 관련 문제점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을 살피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키로 중지를 모았다.

충남도내 축사 55.9% 무허가... 적법화 지원 나서야

맹창호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7-02-21 14:20



▲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충남도의원)은 21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차 연구모임을 갖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충남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분석서 드러나

충남 도내 축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나 적법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21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가운데 현황이 집계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에는 축산농가에서 1만6926호의 축사를 운영 중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가 9461호 55.9%에 달했다. 나머지는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였다.

특히 무허가 축사가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하거나 창고로 허가받고는 축사로 활용하는 등 무허가 유형도 제각각으로 이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농림 등 부서별 협업을 통한 제도정비가 요구됐다.



3. 제3차 연구모임 (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① 제3차 연구모임(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회의자료



2017. 5. 17 (수)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개최계획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

I 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5. 17.(수) / 14:00~17:00
- 장 소 :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인 원 : 150명 이상(연구모임 회원 21, 충남도민 등 다수)

II 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진행흐름

시간		내용	진행방법	비고
13:30 ~ 14:00	30'	▶ 참가자 등록		
14:00 ~ 14:05	5'	▶ 개 회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이상준 (연구모임 간사)
14:05 ~ 14:10	5'	▶ 환영사		윤석우 도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14:10 ~ 14:15	5'	▶ 인사말씀		좌장) 김응규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14:15 ~ 15:30	25'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발표	문원탁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25'	▶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충남도 대응방안	발표	김택수 팀장 (충남도 축산과)
	25'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응한 개선과제	발표	전형률 사무국장 축산환경관리원
15:30 ~ 16:15	50'	▶ 전문가 토론	토론	좌장 등 토론자
15:15 ~ 17:00	50'	▶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7:00 ~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좌장) 김응규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III 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주요 안건

- 주제발표
 - 주제 1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 주제 2 :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충남도 대응방안
 - 주제 3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응한 개선과제
- 토론 및 질의응답

제 1 주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문원탁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목 차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점검·관리시스템별 세부 운영계획
4. 참고자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2017. 5.



농림축산식품부

1 추진 배경

① 현황 및 문제점

-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가축분뇨법), 축사시설 건폐율 초과(건축법) 등 상당수 농가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

* (전체) 60,190호, (적법화 완료) 2,615호(4.3%), (추진 중) 12,963호(21.5%)

- '18.3.24일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축사는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단계별 행정처분 : 1단계('18.3.24) → 2단계('19.3.24) → 3단계('24.3.24)

-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위반, 담당부서 간 협업 미흡, 농가 참여 부족 등으로 적법화 추진 지연

* 건폐율 적용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이행강제금 경감 등

- (관련법령 위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면적 제한, 입지제한지역 설정 이전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가 관련법령(하천법, 군사보호법, 학교법 등)에 위반
- (담당부서 간 협업 부족) 주민 민원(주민동의서 요구), 관련부서(축산, 환경, 건축) 간 협업 부족 등으로 인·허가 절차 지연
- (농가 참여 부족) 비용(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부담, 복잡한 행정절차(4~5개월 소요) 등을 이유로 적법화 추진 유보·관망

◆ 추진과정상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자체·축산단체간 협업을 통한 추동력(推動力)으로 유예기간내 적법화 추진

②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여건 조성
-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13.2.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13.5.31)

*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 확대 :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 합성수지 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24, 시행 '15.3.25)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 가축분뇨법 시행령('15.3.24) 및 시행규칙('15.3.25) 일부 개정

* 육계·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조정 등

○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15.4.27.)

○ 이행강제금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 개정('15.8.11)

○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처벌유예, 가축분뇨법 개정('15.10.28)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안내 등 지자체·농가 대상 교육·홍보

○ 축산종사자 의무·보수교육 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17년 46,600명 예정)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 제작·배포('15.11.11, 3천부)

○ 무허가축사 개선 순회설명회('14.11.21~27, 1,764명 / '15.11.30~12.11, 1,793명)

○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추진반(건축·환경·축산부서 참여)' 구성토록 시달 조치('16.5.30)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16.5.30, 150천부)

○ 전국적으로 무허가축사의 실태 파악을 위한 『무허가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 실시 ('16.5~9월)

○ 관계부처 및 사·도 중앙 T/F 회의('16.9~11월, '17.4월)

* 지자체·축산단체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 중(5.16. 사·도부지사 영상회의시 논의)

2 추진방향

〈기본방향〉

◆ 중앙 합동으로 지자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농가는 적법화 절차 안내대상농가 누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 ①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②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산을 위한 점검관리 시스템 적극 활용

◆ 목표 : 60,190호 무허가축사 중 연내 42,133호(70%) 적법화 추진

□ 무허가축사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 시도 부지사, 관련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영상회의 개최

-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독려하고,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산을 위한 점검·관리 시스템 적극 활용

○ (지자체) 농식품부 차관 주재 관련부처 및 시도부지사 영상회의, 중앙 T/F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관리

○ (축산농가) 축산단체 실무 T/F 구성·운영, 중앙상담반 구성·운영, 축산농가 대상 상시 상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가 참여 확산

◆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점검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가동하여

- ☞ 연내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 중 70%이상을 적법화 목표로 추진

<상시 상담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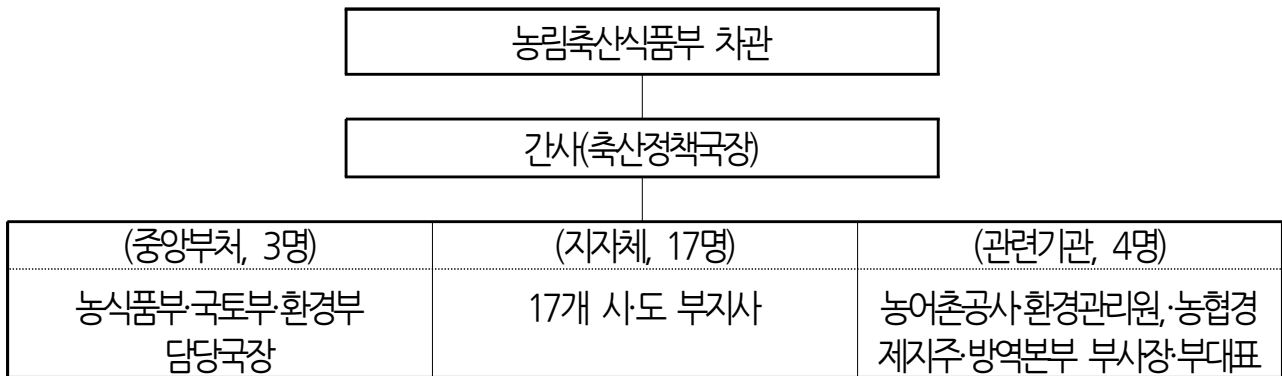
- 관계부처 및 시·도 부지사 영상의회의**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 (정보공유)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총괄)
 - 매일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중앙 T/F** (관계부처·지자체·단체 사전 협의체 기구)
- 환경부** (환경 분야)
- 국토교통부** (건축 분야)
- 축산단체 실무 T/F** (실무 행정지원 기구)
 - 무허가 적법화 절차안내
 - 상담 결과 회신
 - 상담 의뢰
- 중앙 상담반** (지자체·농가 컨설팅 지원)
 - 시·도별 무허가 추진반 (건축·환경·축산/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농협경제제주 서율·대전)
 - < 조합 컨설팅 >
 - A그룹 : 전체 집합교역(작목회화)
 - B그룹 : 멘투맨 컨설팅
 - C그룹 : 그룹별 인허가 신청 지원(건축사 일괄서류 접수)
- 무허가축사 상담실** (농협경제제주, 축산환경관리원)
 - 상담 내용 접수
 - 회신 내용 확인
- 농협 축산정보센터** (<<https://livestocknonghyup.com>>) (전문가 상담실)
 - 2차 상담 의뢰
 - 상담 결과 회신
- 무허가축사 상담실** 138개(지역축협)
 - 1차 상담 의뢰
 - 상담 결과 회신
- 시·군별 무허가 추진반** (건축·환경·축산)
 - 자문 개선 방법 협의
 - 인·허가 신청
 - 인·허가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

3 점검·관리시스템별 세부 운영계획

① 관계부처 및 시·도부지사 영상회의 운영

- ☐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 시·도 부지사, 관련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영상회의 개최



- ☐ (운영) '17.5월~'18.3월 까지('17. 5월 개최, 매월 1회 이상)

- ☐ (역할)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관계부처·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건의사항 논의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협의체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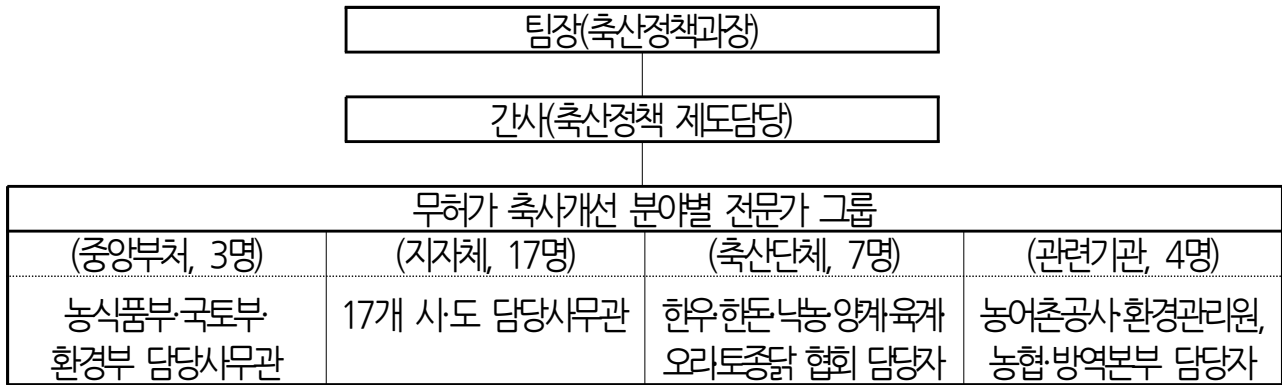
- 관계부처·기관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 중앙 T/F에서 상정한 안건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 논의·개선방안 도출

【 각 기관별 역할 】

기관	역할
농식품부	- 시·도부지사 영상회의 관리·운영 총괄 - 회의자료(관계부처·지자체 추진상황, 건의사항 등) 취합 및 작성
환경부	- 소관부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축산단체 건의사항 사전 검토
국토부	- 소관부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축산단체 건의사항 사전 검토
지자체, 관련기관	- 지자체 및 관련기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② 중앙 T/F 구성·운영

- ☐ (구성)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팀원은 중앙·지자체·생산자 단체·관련기관 담당자 31명 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팀원 중 지자체 3개 시·도를 17개 시·도로 확대, 오리협회 추가(환경관리원 행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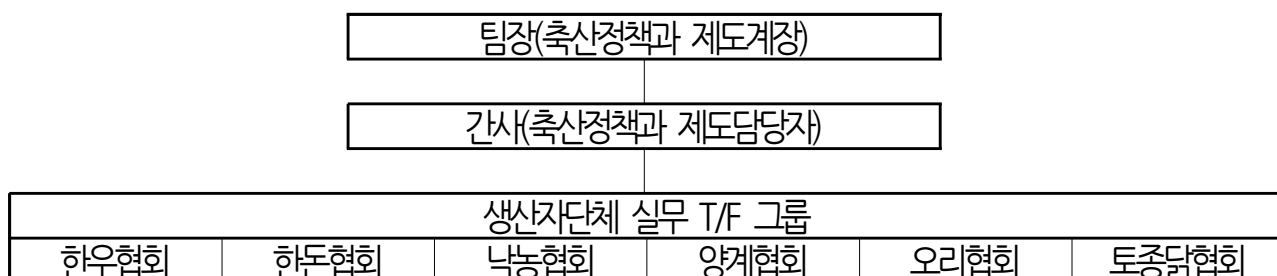
- ☐ (운영) '16.9월 ~ '18.3월 까지('17. 4.21.개최, 매월 1회, 필요시 영상회의 병행)
- ☐ (역할) 지자체·축산단체별 추진상황 점검, 현장 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 관계부처 및 시·도부지사 영상회의 안건 상정 등 사전 협의체 기구
- 각 시도(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 현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애로사항·건의사항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 협의된 사항별 유권해석, 제도개선 지침내용 등 시달
 - 관계부처 및 시·도부지사 영상회의시 상정 안건 작성

【 각 기관별 역할 】

기관	역할
농식품부	- 중앙 T/F팀 관리·운영 총괄 -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관리 총괄 - 지자체·단체 건의사항 취합 안건 상정
환경부	- 가축분뇨법, 4대강수계법 등 유권해석 및 건의사항 검토 - 검토사항은 시·군 담당 환경부서에 공문 시달
국토부	- 건축법, 국토개발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유권해석 및 건의사항 검토 - 검토사항은 시·군 담당 건축부서에 공문 시달
지자체, 관련기관 축산관련단체 등	-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집 → 전달(중앙TF) - 적법화 진행 현장지원, 점검 및 의견수렴

③ 생산자단체 실무 T/F 구성·운영

- ☐ (구성)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제도계장을 팀장으로 하고, 팀원은 한우·한돈·낙농·양계·오리 소속직원 등 6명 내외 실무자로 구성



* 필요시, 육계협회·농협 등도 TF 팀원으로 추가 참여

- ☐ (운영) '17.4.24.~'18.3.까지(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까지 운영)

* 각 단체별 무허가축사 전담자를 구성하여 운영, 정보공유를 위해 주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 (역할) 단체별(지자체 포함) 추진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조치 등 실무 행정 지원

- 생산자단체별 소속농가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 단체 회원별 진행상황 점검 및 농가별 적법화 애로사항 분석
- 지자체별 추진상황 취합(매월말 기준) 지자체별 상황판 관리
- 적법화 우수농가·우수지자체 사례 발굴 축산단체 및 지자체 전파
- 중앙 T/F회의시 상정 안건 작성

【 각 기관별 역할 】

기관	역할
농식품부	- 생산자단체 T/F팀 관리·운영 총괄 -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관리 총괄 - 적법화 우수농가·우수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자체 전파 - 중앙 T/F 회의자료 준비
축산단체	- 단체 회원농가에 대한 적법화 절차 안내, 추진상황 파악 -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대해 단체 회원농가 비교 분석 - 지자체·단체별 추진상황판 관리 - 적법화 우수농가 소속회원 농가에게 전파

④ 중앙상담반 구성·운영

□ 운영방향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 역할이 큰 만큼,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해당 관할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중앙상담반 구성·운영 계획

- (구성)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등 9명 내외 전문가로 30개반 구성·운영

- (운영) '17.5.~'18.3.까지(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까지 운영)

- (대상) 적법화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자체 및 해당 관할 축산농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실적 및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30개 시·군 선정

- (지원내용) 대상 시·군별 2~3일간 방문 점검 및 대상 농가 컨설팅 실시

- 지자체에 대한 적법화 추진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 현장 컨설팅(절차 안내, 법률상담 등)

- (진행방법) 1일차(무허가축사 적법화 집합교육) → 2~3일차(농가 맨투맨 컨설팅)

□ 추진절차

- 대상 지자체 선정(농식품부) → 지자체별 일정 협의(농협) →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파악(농협, 지자체) → 집합교육·개별농가 컨설팅(중앙상담반) → 사후관리(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 각 기관별 역할 】

기관	역할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시달, 중앙상담반 운영 총괄 - 지원대상 30개 시·군 선정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국)	- 중앙상담반 사업추진주체 -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상담반 구성·운영 - 시·군별 일정 수립 및 사업 추진
대한건축사협회	- 적법화 절차 교육 및 지자체 사전 면담 - 해당 관할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맨투맨 컨설팅
지자체	- 지자체별 주요 현안 파악 및 대응 - 해당 관할 축산농가 조례에 대응한 적법화 상담
축산환경관리원	- 사후관리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련 상담
축산단체	- 각 축종별 현안 파악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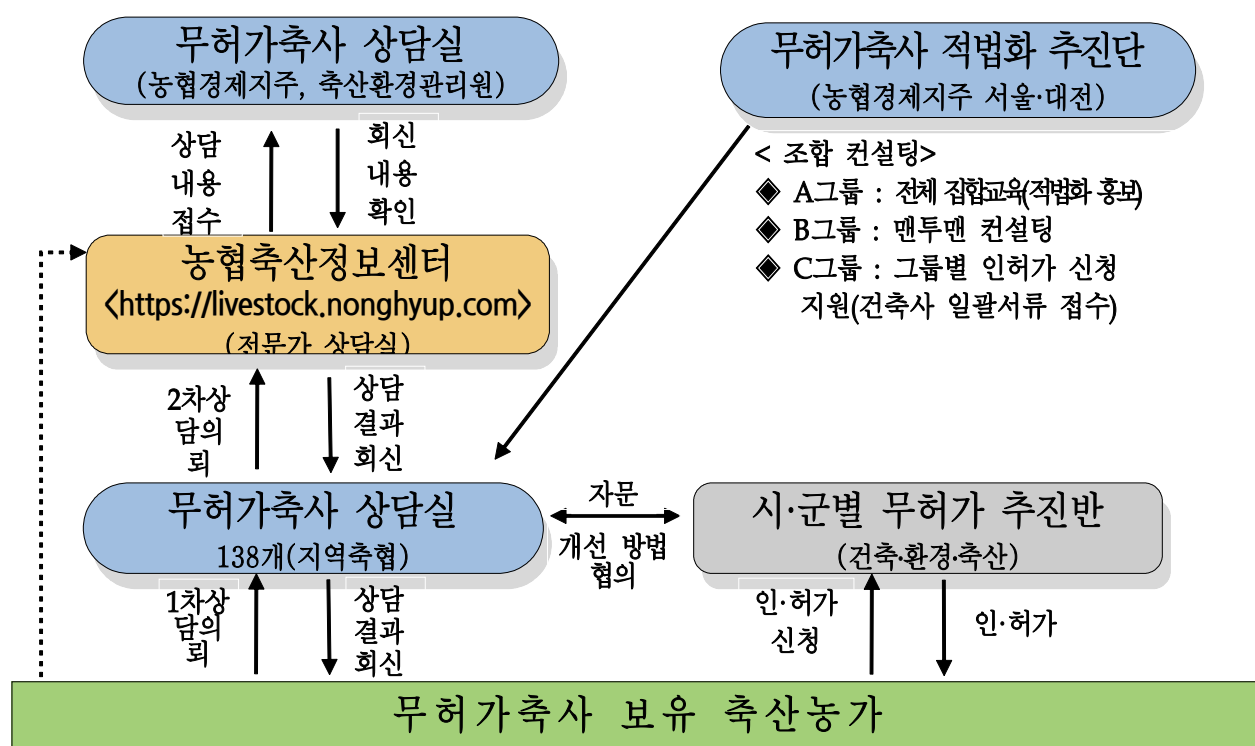
⑤ 상시 상담체계 구축 운영

□ 운영방향

- 기존 운영시스템을 활용, 상호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허가축사 대상농가에 대한 상시 상담 지원

□ 기존 운영시스템 연계·운영

- 무허가축사 상담실(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지역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농협경제지주), 시·군별 무허가 추진반(지자체)을 통한 축산농가 상담 지원으로 조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도



【 각 기관별 역할 】

기관	역할
무허가축사 상담실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농가 상담 지원·운영 총괄
농협축산정보센터	- On-Line 상담 지원 및 축산농가 상담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농협경제지주 서울·대전)	- 지역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관리
무허가축사 상담실(지역 축협)	- 지역축협 조합원 상담, 관할 축산농가 일괄서류 신청 지원
무허가축사 추진반(지자체)	- 관할 축산농가 상담 및 인·허가 지원 총괄

참고 1**점검·관리시스템별 주요 역할**

반별	업무 내용
관계부처 및 사도 부지사 영상회의	·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관계부처 및 사도 추진상황 점검 · 현장애로건의사항 논의 및 개선방안 도출
중앙 T/F	· 사전 협의체 기구 ·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 현장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 · 관계부처 및 사도 부지사 영상회의 상정 안건 작성
생산자단체 실무 T/F	· 실무 행정지원 기구 · 소속단체 회원농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 단체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상황판 관리 ·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조치 · 중앙 T/F 회의 상정 안건 작성
중앙상담반	·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진한 지자체 현장점검 및 해당 관할 축산농가 컨설팅 · 지자체에 대한 적법화 추진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 현장 컨설팅(절차안내, 법률상담 등)
상시 상담체계	· 축산농가 대상 적법화 추진과정상 민원 상담 · 지역축협과 사군 무허가 추진반 연계를 통한 안허가 관련 행정 지원 · 온라인 상담실 운영

참고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가축분뇨법 '14.3.24)

- ☐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 (개선)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② 축사 거리제한 재 설정(권고안 통보 '15.3.31)

- ☐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 ☐ (개선)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 설정

* 한·육우 100m, →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 → 400m(1,000마리 미만), 700m(1,000 ~ 3,000마리), 1,000m(3,000마리 이상)

③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 ☐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 ☐ (개선) 현재, 138개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109개소, '12.9월)

④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 '13.5.31, '15.4.27)

- ☐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 ☐ (개선)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⑤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⑥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 ☐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⑦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 건축 신고(허가)·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⑧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

- ☐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 (개선) 축사 바닥면부터 30cm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cm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⑨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15.3.24)

- ☐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 (개선)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⑩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 ☐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적용을 3~4년간 유예(가축분뇨법 개정, '15.12.1)

⑪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건축법 '15.8.11, 시행령 '16.2.11)

- ☐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위반면적×시가표준액 100분의 50×위반내용(100분의 70, 80, 90, 100)× 50%

-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제 2 주제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충남도 대응방안

김택수 팀장(충청남도 축산과)

목 차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대응 방안
3. 참고자료



2017.5.17.(수)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충남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충청남도

I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추진배경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환경부에서 가축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가축분뇨법 개정(14.2.25)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무허가축사 현황

- 사육농가 17,396호중 무허가 축사 8,523호(49%)
- 축종별로 농가가 많은 순으로 무허가 축사 비율이 높지만, 특히, 소의 경우 외부에서 사육하는 관계로 무허가 축사를 늘리기가 용이

* 소 > 돼지 > 닭 > 오리 순 / 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함(90% 이상)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관건은 시·군,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

→ 중앙·지자체·생산자단체간 상호 협력하에 2018.3.24.까지 적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경과
 - 2015.11.11. 무허가 축사 개선 정부대책 설명회 및 시군 시달
 - 2015.12.08.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순회 설명회
 - 2016.5~8월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실시 : 무허가 8,523호
 - 2016.05.31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군별 추진반 구성·운영

구분	추진단구성[부서/직렬(인원)]						설계사 지정	비고
	계	축산	건축	허가	환경	산림		
충남	47	16	11	4	15	1	지정(6),미지정(9)	

※ 추진단 47명(100%) : 축산16명(34%) > 환경15(32) > 건축11(23) > 허가4(9) > 산림1(2)

- 2016.07.05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군 담당자 토론회 개최

⇒ 토론에서 도출된 사항(합동워크숍 등 7건) 농식품부 건의

- 2016.06.14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업무협조 요청(건축사협회)

- 2016.10.27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방안 알림

- 2016.11.16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 워크숍 참석(충남 21명)

※ AI·구제역 발생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어려움이 있었음.

- 2017.5.12.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군 담당과장 회의 개최

· 농정국장 주재 도(축산,건축,환경), 시·군, 축산단체 등 37명

❖ 시·군 적법화 추진상황,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발표

❖ 적법화 추진 우수시군 사례 소개 및 타 시·군 업무 공유

❖ 축산단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행정(축산·건축·환경) 및 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결과

- 전국 8개 시·도 중 경기(9%), 전북(8%)에 이어 3위(4%) 정도 수준이며

- 전국 평균 3.2%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

- 추진중에 있는 축산농가는 1,534호로 18% 정도임

※ 상담 중에 있는 7,238호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적법화 추진 상황 : 2017.5.1.현재 】

사육농가	적법화 대상	교육 (회/명)	상담	추진중	완료(%)	고발
17,396	8,523	74/9,506	7,238	1,534	359(4.2)	17

* 전국 적법화 추진 상황(17년 4월 현재) : 적법화 대상 60,190호 → 완료 1,947호 (3.2%)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문제점

○ 적법화 시 축산·건축·환경·산림 등 여러 부서 및 관련법 적용

- 관련부서 협조와 건축사 및 위탁 분뇨처리 등 절차가 복잡
- 시·군별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
- 국토부·환경부에서는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실제 적용하는 시·군에서 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 혼선

예) 임야에 축사, 퇴비사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복무의무면제’ 불가통보

-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 후 적법화 추진

○ 축산농가의 위기의식이 약하고,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미약

- 1992년 무허가 축사 추진 시 겪었던 학습효과로 인해 위기의식 약함
 - * 당시에는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 절차 등을 잘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구제
-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의 경우 적법화에 대해 소극적
- 축산단체 의견 : 실제 비용(2~3천만원)을 들여서 적법화가 될지 불투명
 - * 의지가 약하다기 보다는 적법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기피가 많다.

○ 적법화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부담

- 측량, 설계 등 적법화 추진에 약 13,000천원 정도 소요
 - * 축종별로 공시지가, 축사면적, 축사구조 등에 따라 소요비용은 매우 편차가 큼

○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 개정 발의 준비 중

- 3년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으나, 적법화 당위성인 인식

○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많음.

- 그동안 건축, 환경, 산림 등에 관한 많은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기간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무허가축사의 절반정도 추정
- 구거(하천부지), 임야, 타인 소유 토지 점유 등

Ⅱ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대응 방안

□ 기본방향

❖ 사군 추진상황 점검강화, 농가 적법화 절차 안내대상농가 누락 방지 중점

①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한 道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사군 및 농가 참여 확산을 위한 점검관리 시스템 적극 활용

⇒ 목표 : 무허가축사 8,523호 1단계(17.12월) 5,966호(70%) → 2단계(18.3월) 2,557(30%) 달성

□ 세부추진 계획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군 담당과장 영상회의

- 매월 관련 부서 및 시·군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등 점검
- 중앙 영상회의와 연계하여 월별 중점 추진사항 등 전달
- 시·군별 부진사유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및 시·군별 지정 설계사 운영 강화

- 시·군별 추진단 정례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유 및 문제점 해결
- 적법화 추진시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부서와 관련된 점에 주목
- 추진단에서는 상담 민원 등이 있을 경우 one stop 민원 안내
- 시·군별로 설계사가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지정 운영

* 미지정 시·군(9) : 천안, 공주, 아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 지역축협 및 축산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 홍보 강화

-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효율적인 추진 대안 마련
- 축산농가 뿐 아니라, 무허가 축사 주변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 무허가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한 대안 마련

시·군 우수사례

측량 및 설계비 지자체 자체 지원 : 2개 시·군(서산, 태안)

- 기 간 : 2017년
- 방 법 : 적법화가 추진농가 측량·설계비 일부 지원
 - 서산 : 172개소(개소당 1백만원) / 172백만원(시비 86, 자담 86)
 - 태안 : 50개소(개소당 2백만원) / 100백만원(군비 50, 자담 50)

적법화 추진농가 일제 조사를 통한 건축사 협회 통보(보령)

- 일 자 : 2017.4.5
- 방 법 : 보령시 적법화 추진농가 수요조사 후 건축사협회 통보
 - 보령시 건축사협회 회원건축사 10개소에 47농가 서류 접수
- 효 과 : 공동추진으로 농가 개별추진 어려움을 최소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적법화 추진(당진)

- 일 자 : 2017.4.28. 개정
- 내 용 : 읍·동지역(도시계획구역 등 제외) 진입도로 심의 완화 적용
 - 현행법상 읍·동지역의 진입도로는 폭 4m 이상이어야 건축허가 가능
 - 읍·동지역 심의에 의해(4m폭 도로 → 3m폭 도로) 완화
- ※ 읍·동지역 진입도 폭 심의 완화는 전국 최초 사례

적법화 추진단의 효율적인 관리(홍성) / 적법화율 16%(충남 1위)

- 적법화 추진단(T/F팀) 구성 : 2016.6.15
 - 팀장(축산정책팀), 팀원(축산과, 민원실, 건축과 실무자)
- 활 동 : T/F 팀과 건축설계사무소 협약 및 긴밀한 연계 시스템 구축
 - 생산자단체, 조합에서 축사 현장 조사 참여 및 적법화 안내·홍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2017.5.1. 현재

사군	사육농가	적법화 대상	교육 (회/명)		상담	추진중	완료(%)	고발 조치*
합 계	17,396	8,523	74	9,506	7,238	1,534	359(4.2%)	17
천안시	954	565	10	820	320	123	25(4.4)	6
공주시	1,951	803	3	860	650	110	7(0.9)	
보령시	1,179	675	6	750	650	200	25(3.7)	4
아산시	819	615	3	817	219	57	14(2.3)	
서산시	1,509	624	3	760	962	134	18(2.9)	3
논산시	873	379	7	457	780	155	19(5.0)	-
계룡시	16	5	1	5	5	1	0	0
당진시	1,511	830	3	600	1,624	24	66(7.9)	1
금산군	373	177	1	129	150	30	10(5.6)	1
부여군	1,348	584	3	670	295	18	13(2.2)	
서천군	574	283	11	1,430	263	263	13(4.6)	
청양군	971	673	3	630	400	220	4(0.6)	
홍성군	2,496	625	1	275	650	74	103(16.4)	2
예산군	2,302	1,340	13	923	100	10	30(2.2)	
태안군	520	345	6	380	170	115	12(3.5)	

* 건축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 된 건수

참고 1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내용(전국 공통)

①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 (현행) 지자체 조례로 20~50%로 건폐율 설정
- (개선) '15. 10월 현재, 133개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

②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 '13.5.31, '15.4.27)

-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 (개선)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③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

-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개선) 축사 바닥면부터 30cm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cm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④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15.3.24)

-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개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 확대 : 젖소, 한·육우

⑤ 축사 거리제한 재 설정(권고안 통보 '15.3.31)

-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 (개선)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 설정

* 한·육우 100m, →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 → 400m(1,000마리미만), 700m(1,000 ~ 3,000마리), 1,000m(3,000마리 이상)

⑥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가축분뇨법 '14.3.24)

-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개선)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⑦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법 개정중-환노위 상임위 통과, '15.6.16)

⑧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

⑨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건축법 '15.8.11)

-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행강제금 경감 계획(현 50% → 40% 이내)

-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⑩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 축사 차양 3m까지,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
-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⑪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⑫ 인·허가 등 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
- 현지 측량후 측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 *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자진신고서 작성후 시군 민원실에 제출



③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부과시 납부
- *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3일 이내 처리)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 '건축신고서'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 제출



⑥ 가축분뇨처리 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접수일부터 7일 이내(신고 5일))



⑦ 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 신고(허가)

-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 3 주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응한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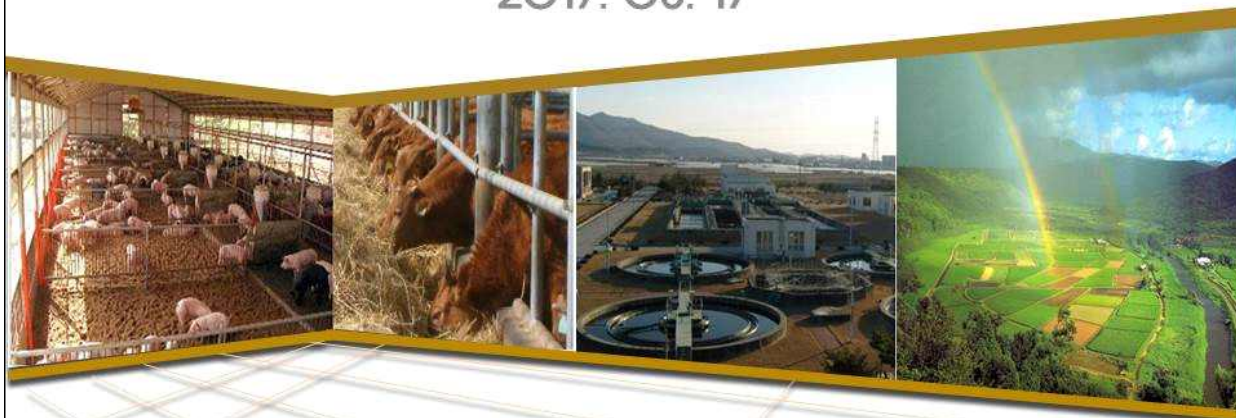
전형률 사무국장(축산환경관리원)

목 차

1.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및 방법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4. 실제 적법화 사례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응한 개선과제

2017. 05. 17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전형률
Institute of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목 차



- 1**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및 방법
-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 4** 실제 적법화 사례
-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1.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및 방법

1.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 전체 축사(축산업 허가·등록기준) 126,067호 중 60,190개소(52.2%)가 무허가·미신고 축사(60,190개소 = 소 52,521 + 돼지 3,135 + 닭·오리 4,534)
- '17년 3월 현재 60,190개소 중 1,947개소(3.2%) 완료, 12,963개소(21.5%) 적법화 추진 중

《 농식품부 추진방향 》

- ◆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점검·관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가동

→ 연내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 중 70%이상 적법화 목표 추진

- 용인시 적법화 추진 현황(2017.2월말 기준 : 용인시 농가별 자체조사 결과)

대상농가	완료	추진 중	준비 중	추진 불가	기타	비고
583호 (100%)	266호 (45.6%)	64호 (11.0%)	228호 (39.1%)	13호 (2.2%)	12호 (2.1%)	

※ 추진 중 : 적법화 진행 중(설계사무소 등 의뢰 및 인허가 진행 중)

※ 준비 중 : 적법화 준비 중(적법화 예정)

※ 추진불가 : 적법화 추진 불가(다른 법률 위반, 개발계획 등)

※ 기타 : 적법화 진행 여부 미결정 등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상이할 경우 지적현황 현지 측량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 후 시·군 민원실에 제출
③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후 부과 시 납부 * 부과, 감경 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 시(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3일 이내 처리) *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자가설계 가능),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등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건축허가 신청서(400㎡ 초과)', '건축신고서(400㎡ 이하)'를 제출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에 설계도면(건축사무소 설계), 대지사용승낙서 등 첨부
⑥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가축분뇨 예측내역서,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 배관도 등 첨부(접수일 부터 7일 이내(신고 5일)) * 건축 관련 인허가와 동시 신청 또는 건축서류 제출 후 부서 협의 시 별도 신청 가능

3.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부담비용 내역



대상농가	비고
① 건축설계비	- 축사규모에 따라 가격이 상승됨(건축사) - 표준산정 방식이 없고, 기본경비(133평이하) 400만원, 133평초과는 평당 3만을 곱한 값임 - 구거, 하천, 구도로 등을 침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② 측량비	- 대지면적에 따라 측량비용 산정(지적공사, 지적측량업체) - 국토부가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표에 따라 시/군 면적대비 측량비 산정 - 도로, 대지 간 등의 경계가 있는 경우 경계복원측량비용 추가 * 2017년 지적측량수수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72호, 2016.12.30)
③ 이행강제금	- 건축설치연도, 건축면적, 건축구조, 공시지가 및 지자체조례 등에 따라 비용편차 발생(시/군) - '18.3.24까지 이행강제금 감경(100의 50)
④ 환경인허가비	- 축사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 발생(약 30~40만원)(환경건설팅업체) * 젖소의 경우 착유세척수 처리비용 소요(약 3천만원)
⑤ 시설보완비	- 위법건축물 적법화 과정 중 시설 철거 및 퇴비화시설 설치 비용 등(건축업자) - 농가의 적법화 방법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

※ "신규 축사의 경우도 건축설계비, 측량비 및 환경인허가비는 비슷하게 소요됨"

4.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종별 개략 소요 비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종별 개략 소요 비용】

구 분 축 종	무허가축사 규모 (평균)	계	①건축 설계비	②축량비	③이행 강제금	④환경 인허가비	⑤시설 보완비
돼지	500평 (1,650m ²)	2,790만원	1,500만원	200만원	750만원	40만원	300만원
소(젖소)	120평 (396m ²)	734만원	400만원	42만원	180만원	40만원	72만원
닭·오리	100평 (330m ²)	760만원	400만원	110만원	150만원	40만원	60만원

- 비고 1. 건축설계비는 시·군마다 평당 단가차이가 있고, 건축 위법 여부 따라 편차 발생
 2. 지적현황축량 이외, 축종별 면적에 따라 '경계복원축량비'* 산정
 * 돼지 : 150만원, 소(젖소) : 30만원, 닭·오리 : 100만원
 3. 이행강제금은 건축 설치연도, 면적, 건축구조 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함,
 개략 500~750만원 소요

* 상기는 참고 비용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1. 건폐율 확보

1) 금번 적법화 대책 최대한 활용

- 자돈 인큐베이터 (가축양육실), 소독 및 방역시설 (물품보관 창고 등),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와 축사간 6m 이하 복도 및 창고

2) 부지구입 및 합 필지

- 지목이 동일하고, 소유주가 같을 경우 절차에 따라 합 필지 추진
- 지목이 다를 경우,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필요 - **관련절차 복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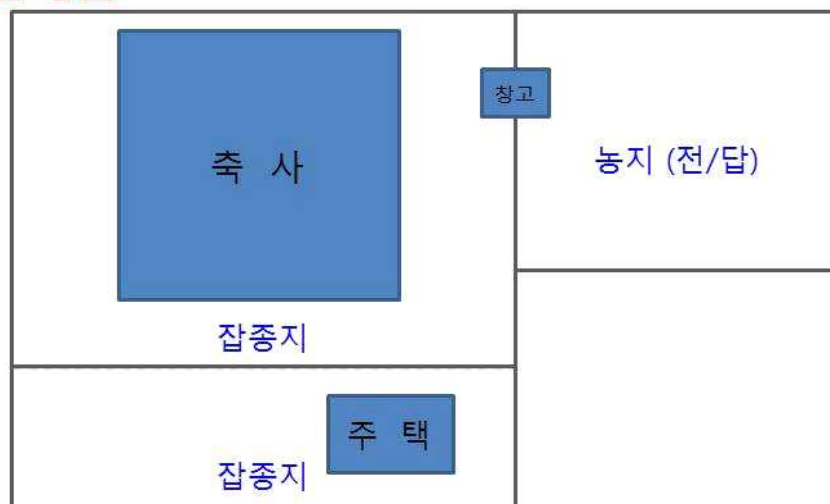
3) 합 필지 없이, 인근부지 면적 인정 요령 (건축과 협조)

- **축사**는 농지법(축사는 농업용 시설)에 따라 **농지에 설치 가능**
(예: 목장용지/잡종지 + 농지(전, 답))
- 합 필지 없이도 **건축물이 2개의 필지에 걸쳐있는 경우** 건폐율 확보 부지로 인정.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예시] 건폐율



4) 단, **주택**의 경우 농지와 함께 건폐율 적용 불가능

- **필지를 분할**코자 할 경우에는 매매, 별도 건축 신축 등 적법 사유가 있어야 가능
(예: 타인에게 판매) - 행정처리기간 15일 소요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2. 가축분뇨처리 증설

1)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도 신축, 증축 가능

<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도 제한 되는지? >

-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는 배출시설(축사)만 제한되며, 가축 분뇨처리시설은 신축, 증축, 개축 가능

2) 18. 3월까지 무허가 적법화를 위해 증축하는 처리시설도 건폐율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관련 배출시설 적법화 과정에서 증축하는 처리 시설도 적용? >

- '13.2.20일 이전에 건축된 배출시설이'18.3.24일까지 적법화 과정에서 증축이 필요한 처리시설도 적용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11))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
- *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 (부칙 제9조)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3. 구거가 있는 경우

- 1) 사용하지 않는 구거는 점용허가 또는 폐지 신청 - 검토기간이 길고 어려움
- 2) 대체 구거 공사 (기부채납), 폐구거는 국가로 부터 양여
- 6개월 이상 (타인과의 합의가 필요없는 경우 기간 짧음)

4. 도로가 통과하거나 인접 도로가 없는 경우

- 1)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는 폐지 또는 우회도로 대체 - 타인과의 합의 필요
- 2) 축사 2천m² 이상은 6m 도로가 인접해야 하나, 면 단위는 제외 가능

< 건축물 허가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는지?>

-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경우 인구가 500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면 단위)은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행도로만 있어도 건축 인허가 가능(건축법 제3조제2항)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는 제외(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천m²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함(건축법 시행령 제28조)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4. 국 공유지, 남의 땅에 있는 경우

- 1) 매입 시, **사용승낙서** 확보 시 적법화 가능
- 2) **400m² (121평) 이하**는 신설되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10년간** 유예
 * 그 외, 입지제한 지역내 축사도 동일 적용 (상수원특별보전구역은 200m²)

5. 관리사가 적법화가 어려운 경우

*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건축과와 협의

6. 주민동의가 어려운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주민동의 없이 인허가 가능 (정부 합동 대책)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7. 임야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

- 1) 산지전용을 통해 **용도변경** 추진 *불법 전용 공소시효 7년
- 2) 단,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면제 신청서**' 반드시 제출

8. 기존 퇴비사를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

- 1) '기재사항 변경'으로 건축법상 조정은 용이함.
- 2) 그러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하므로 적법화 기간에 적법화 필요
 * 증가된 축사면적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보는 필요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기타 대응전략

<중요> 거리제한 이전 설치 축사 증빙서류는?

- 이전에 축산업 등록증,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부 증빙, **이장 및 주민 3인 확인서, 가축 약품 및 사료구입 증명서** 등

* 단, 5년 이내일 경우 고발조치 및 벌금 부과

환경부 고시 2014-125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2. 주요 애로사례별 적법화 방법



기타 대응전략 (대책반/시설 현대화)

적법화 기간 / 시설 현대화 지원

- 정부 합동(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각 시군에 시달 ('15. 11. 11)
⇒ 시달시점 ~ 2018. 3. 24까지가 사실상 **무허가 적법화 기간**
⇒ 2017년부터 무허가 적법화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최우선 지원, 가설건축물 지원 허용**

상담지원센터 / 시·군별 대책반

- 무허가 축사의 경우, 종합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지원센터**'운용 (축산단체 요구사항) => (재)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시군별 '**무허가 대책반**'(축산과, 건축과, 환경과 참여) 구성 및 적법화 실적 관리 =>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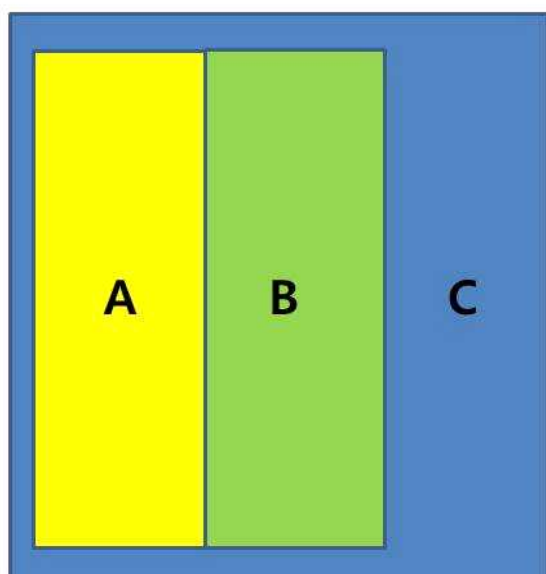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가. 유형 1(건폐율 이내 무허가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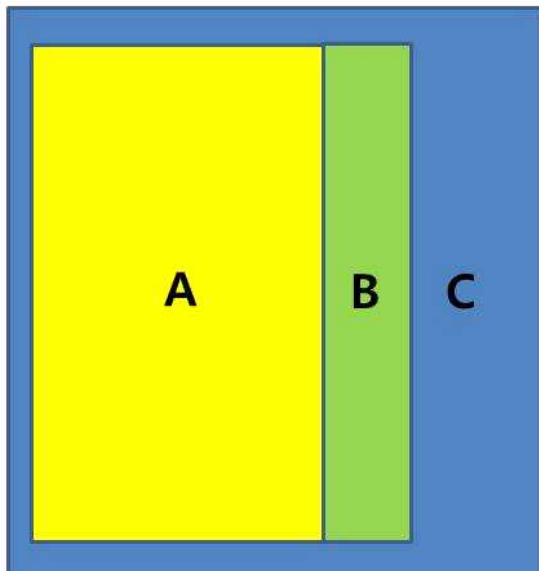


- 부 지 면 적(C) : 1,000평
(건폐율 60% 지역)
- 허 가 축 사(A) : 300평
- 무허가축사(B) : 300평
- 적 법 화 방 법
 - 1) B 적법화(정식 또는 가설)
 - 2) B 철거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나. 유형 2(건폐율 초과 무허가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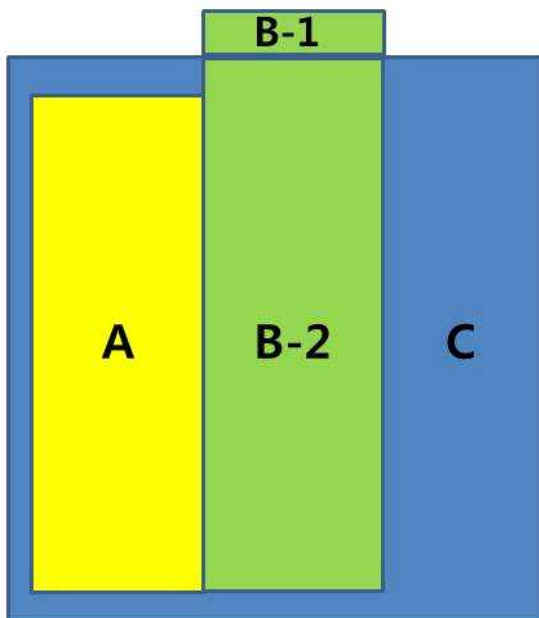


- 부 지 면 적(C) : 1,000평
(건폐율 60% 지역)
- 허 가 축 사(A) : 600평
- 무허가축사(B) : 200평
- 적 법 화 방 법
 - 1) B 적법화(가설건축물)
 - 2) 인접부지 사용권 확보
(건폐율 증가) 후 적법화(정식)
 - 3) B 철거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다. 유형 3(타인(개인) 토지 내 무허가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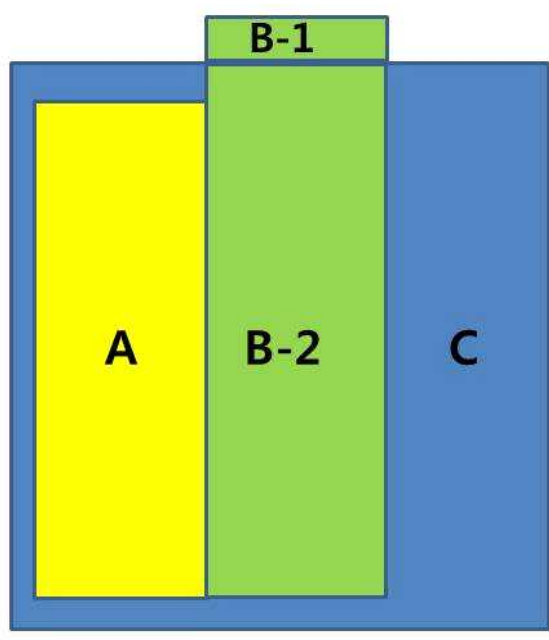


- 부 지 면 적(C) : 1,000평
(건폐율 60% 지역)
- 허 가 축 사(A) : 250평
- 무허가축사(B) : 300평
- 적 법 화 방 법
 - 1) B-1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적법화(정식 또는 가설)
 - 2) B-1 철거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라. 유형 4(타인(국공유지) 토지 내 무허가 축사)



- 부 지 면 적(C) : 1,000평
(건폐율 60% 지역)
- 허 가 축 사(A) : 250평
- 무허가축사(B) : 300평
- 적 법 화 방 법
 - 1) B-1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적법화(정식 또는 가설)
 - 2) B-1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적법화(가설)
 - 3) B-1 철거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형



▣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요령(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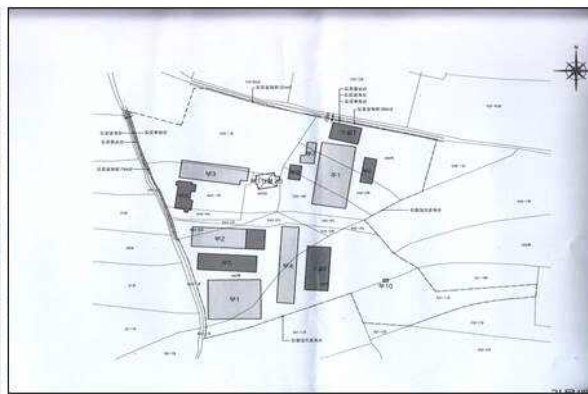
구분	무허가 내역	적법화 방법	적법화 절차	비고
유형1	건폐율 내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부분 적법화 (정식 또는 가설) 또는 멸실	측량 → 이행강제금 → 설계 →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	
유형2	건폐율 초과 무허가 건축물	1. 인근 토지 사용권 확보(건폐율 증가) 후 적법화(정식) 2. 무허가 부분 적법화 (가설 공사) 또는 멸실	측량 → 이행강제금 → 설계 →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	
유형3	타인(개인)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	타인(개인)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적법화(정식, 가설) 또는 멸실	측량 → 타인 토지 사용권 확보 → 이행강제금 → 설계 →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	
유형4	국공유지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	국공유지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적법화[정식(토지 매입 시), 가설] 또는 멸실	측량 → 국공유지 사용권 확보(매입, 임대) → 이행강제금 → 설계 →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	



4.

실제 적법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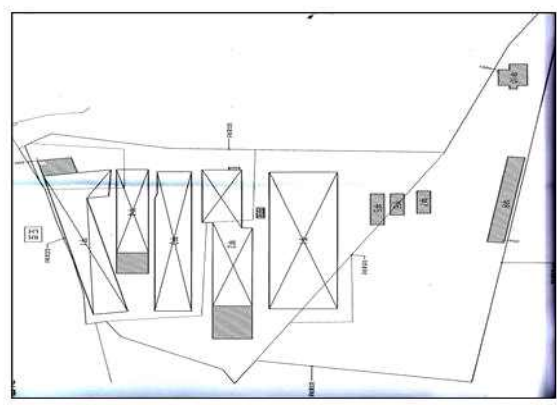
4. 실제 적법화 사례



<사례1> 축사 사이로 도로가 지나가고,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 도로는 용도 폐기함 * (관리청 폐기 신청 필요)
 - 건폐율은 위쪽 자연녹지(20%)를 포함시키고 합필하여 19.81%로 맞춤
- *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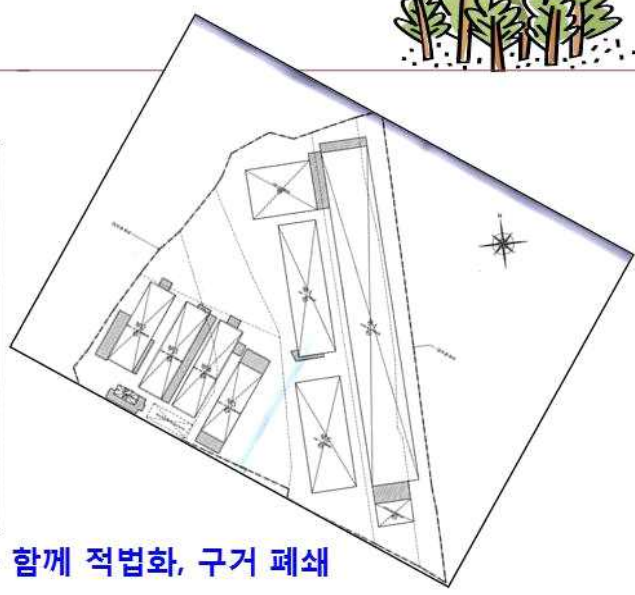
4. 실제 적법화 사례



<사례2> 임야에 축사가 위치한 경우

-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적법화 함.
- 액비저장조의 경우 건축물이 아니므로 일부 점유하였으나 적법화

4. 실제 적법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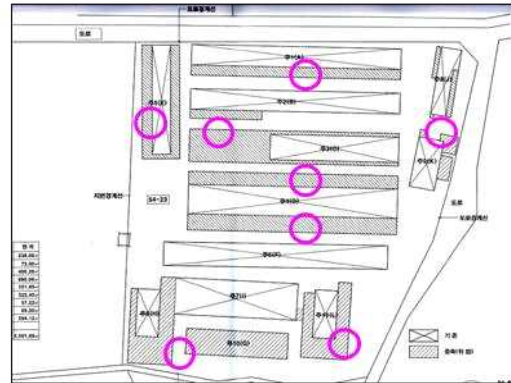


<사례3> 한우 축사와 양돈 축사를 함께 적법화, 구거 폐쇄

- 축종이 달라 별도 허가된 축사를 축종에 상관없이 건폐율에 맞추어 적법화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었으나 합하여 대장을 만들)
- 일부 구거부지가 있었으나 폐쇄조치* 함

* 구거폐쇄 : 1) 휴관 매설 후 사용승낙 2) 대체 구거 매입 · 교환
3)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도 폐기 후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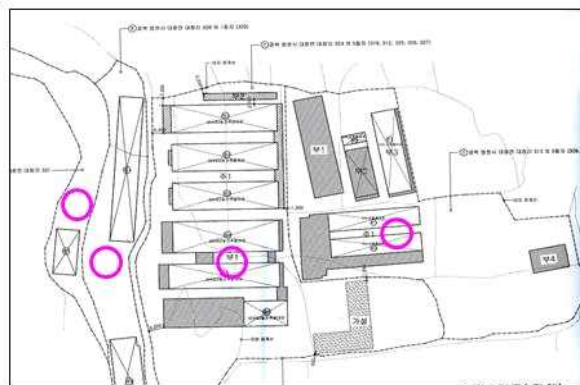
4. 실제 적법화 사례



<사례4> 농지를 확보하여 건폐율에 적합하도록 하여 적법화

- 빗금 친 부분이 모두 무허가임. (축사마다 조금씩 무허가가 포함된 경우)
- 인근 농지를 확보하여 건폐율에 맞추고, 무허가된 개별 축사를 모두 적법화 함 (재설계)

4. 실제 적법화 사례



<사례5> 건폐율을 위하여 분할 필지하여 따로 따로 적법화

-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에 맞추도록 개별 필지 분할 (장기간 소요)
- 일부 필지(부지4)는 필지 사이 건물이 위치하여 건폐율 인정
- 일부 임야도 모두 산지전용, 도로폐기, 주변 농지 포함 등.

4. 실제 적법화 사례



<사례6> 축사차양 및 축사간 지붕연결부를 가축사육시설로 이용

- 축사간 지붕연결, 축사차량 연장하여 축사로 이용
- 처마 및 지붕 연결부를 **가축사육시설로 포함하여** 건축물대장 및 배출시설 재작성

4. 실제 적법화 사례



<사례7> 같은 사업부지에 있는 농업인 시설물과 무허가 축사 필지 분할

- 원칙적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은 각각 필지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창고시설과 축사(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는 필지분할 없이 하려면 창고시설을 방역창고(소독약 및 방역장비 등)로 전환하면 될 것으로 보임
- * 방역창고는 건축 바닥면적(건폐율=건축바닥면적/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 환경부 소관 법령

○ “가축분뇨법” <법률 제12516호, 2014.3.24.> 부칙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부 칙 <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 (문 1) 이 법 <법률 제12516호, 2014.3.24.> 시행일은 언제인가?

- (의견 1) 이 법 시행일은 **2015년 3월 25일**임.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 환경부 소관 법령

- (문 2) 부칙 제8조 제2호 중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 이란 의미는?
 - (의견 2) “이 법 시행 당시 ” 라 함은 “이 법 시행 중에 ” 란 의미로서 2015년 3월 25일 이후를 말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 고시 이전 ” 이라 함은 해당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이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일자 이전을 말함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7715호, 2005.12.7.> 부칙 제4호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일자부터 적용해야 함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 환경부 소관 법령

-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부 칙 <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 환경부 소관 법령

- (제1항제1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 4년(2019.3.24.)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젖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 (제1항제2호) 제1호외의 배출시설(일반 농가) : 법 시행후 3년 유예('18.3.24.)
 -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에 관하여 각각 '19.3.25. 및 '18.3.25.까지 유예
-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 환경부 소관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 (의견) 제1항에 따른 규모와 기한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에 관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 농식품부 정책방향(2016.10.19. 보도자료)

- ▶ 적법화 기한내에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 등과 「축산법」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적법화 이행 강조

	A. 1단계 '18.3.24 일반 배출시설	B. 2단계 '19.3.24 소규모 배출시설	C. 3단계 '24.3.24 규모미만
구분	1단계 '18.3.24일까지	2단계 '19.3.24일까지	3단계 '24.3.24일까지
돼지	600㎡이상	400㎡~600㎡	400㎡미만
소·젓소·말	500㎡이상	400㎡~500㎡	400㎡미만
닭·오리	1,000㎡이상	600㎡~1,000㎡	600㎡미만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 당초 개정 취지(국회 심사과정 중 축산업계와 합의사항)

A. 제1호 소규모 배출시설: 4년 유예	B. 제1호의 배출시설(일반농가) : 3년 유예		C. 규모미만 시설
C. 규모미만 시설 (변경신고대상)		C. 규모미만 시설 (변경신고대상)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이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신축 또는 증축·개축한 배출시설을 말함 (환경부 유역총량과-2322, 2015.6.10. 유권해석)

5.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검토사항



가축분뇨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요약)(2014.2)

주요 개정내용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	우리부 검토의견	심사자료
25.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해 입지제한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부칙 제8조)	- 이완영의원, 3년 유예로 수정안 제시 예정	- 수정안 수용 (축산업계 합의사항)	p.192
26. 폐쇄명령 등의 적용 유예 (부칙 제9조) - 소규모 : 법 시행 후 4년 - 일반농가: 법 시행 후 2년	- 이완영의원, 일반농가에 한해 3년으로 연장하는 수정안 제시 예정	- 수정안 수용 (축산업계 합의사항)	p.194
27.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중지명령 적용을 유예 (부칙 제9조제3항 신설)	- 이완영의원, 추가 수정안 제시 예정	- 수정안 수용 (축산업계 합의사항)	

※ 소관 법률에 대하여 해석 권한이 있는 환경부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



감사합니다.

전형클 (bupsoon@ilem.or.kr)

2 제3차 연구모임(전문가 교육 및 토론회) 결과보고



2017. 5. 17 (수)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전문가교육 및 토론) 결과보고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전문가교육 및 토론) 결과보고서

□ 개 요

- 때 · 곳 : '17. 5. 17(水) 14:00 ~ 17:00 / 아산시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참 석 : 150명 이상(연구모임 회원 21, 충청도민, 직원 등 기타 5)
- 회의내용

주제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주제 2)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충남도 대응방안

주제 3)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응한 개선과제

□ 참석자 명단

- 충청남도 도의회
 -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회원
 -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 등
- 지역주민
 - 별첨 확인(참석자 명단)
- 외부 전문가(발표자)
 -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김택수 충남도 친환경축산과 팀장,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 외부 전문가(토론자)
 - 이영민 축산협동조합 차장, 이문규 DAS 종합건축사무소 건축사,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 회장, 손경찬 아산시 한우협회 지부장
- 기타 : 충청도의회 사무처, 충남연구원

회의결과

☐ 환영사

-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님
-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

☐ 인사말씀

- 김응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위원장님

☐ 주제발표

- 주제 1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방안

발표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

- 주제 2 :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충남도 대응방안

발표자 : 충청남도 축산과 김택수 팀장

- 주제 3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응한 개선과제

발표자 :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

☐ 질의응답 내용

- 주민1

-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함

- 손경찬 아산시 한우협회 지부장

- 무허가축사 문제는 적법화가 아니라 양성화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감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일반 농가들은 2~3년 후면 폐쇄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축산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농민이 상담할 창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행정에서 서로 떠 넘기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감리비 및 설계비 등을 농가에 부담시키지 말아야 할 것임

○ 주민2

- 일반 농가 중에는 4년까지만 하고 폐쇄하겠다는 분들도 있음
- 대규모 축사는 해결이 가능할지 몰라도, 소규모 축사는 어려움
- 무허가축사와 관련한 규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임

○ 주민3

- 아산시의 경우 대부분 고령화로 10~20년 사이에 사업을 그만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음
- 이런 분들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무허가축사를 개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각한 편임
- 물론 깨끗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일반주민이 축사가 특히 냄새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는데 이는 어불성설임
-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 주민4

- 가설건축물의 경우 아산시에서는 허가 난 1000평 중 700평만 해 준다고 함
- 조례도 법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우리는 가설건축물이라도 100% 해 줬으며 함

○ 관내 사슴목장 전담 설계사무소 직원

- 퇴비사 적용기준의 경우, 옹벽 2m, 20cm 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축종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음
- 천안시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주민5

- 퇴비사의 경우 5m를 띄우도록 하고 있는데, 퇴비사를 부대시설로 보고 완화할 수 없나?

○ 낙농 운영 청년

- 축사를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는가?
- 아산시 가축사육제한거리가 강화되면서, 이전을 준비하는데 주민동의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임
-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창축산계장

- 2006년 아산시에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적법화로 말을 바꿨음
- 가축사육제한거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법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원인은 무엇인가?

토론요지

○ 손경찬 아산시 한우협회 지부장

- 무허가축사 문제는 결국 축산 농가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으로, 적법화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적법화가 아닌 양성화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함
- 건축, 축산, 환경 등 관련 부처(서)가 합심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현재는 떠 넘기기, 각 양각색 법리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음
- 설계비도 막대하여 문제가 있으니, 절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민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이 참석해야 함

○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 회장

- 축산단체가 조직된지 10년이 되어가지만, 활동이 저조함
- 아산시에서는 사육제한 거리가 확대되고 있는데(예, 돼지 등 800m⇒2km)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저지해야 할 것임

○ 김택수 충남도 친환경축산과 팀장

- 무허가축사 문제는 과거에 축사를 지을 때부터 정확히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흐르고, 제도가 바뀌다 보니 문제가 된 것임
- 적법화는 꼭 지켜야 하는 문제이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축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영민 축산협동조합 차장

- 가축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시행)에 의거하여 처음에는 양성화가 추진되었는데, 현재는 적법화로 추진되고 있음
- 무허가 축사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축산과, 환경보존과, 허가담당관실 등이 함께 움직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서 축사거리가 아산시는 5m인데 이를 1m로 완화시켜 냈는데, 조례 개정 에 딱 1년 3개월 걸렸음
- 앞으로 무허가축사 문제는 1년 밖에 시간이 없는데 조례 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걱정이 됨

- 아산시의회에서 사육제한 거리 관련 개정발의가 있었는데, 너무 강화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 아산시에서는 이러면 축사를 신축할 수도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임
- 퇴비사 신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m나 이격하여 신축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상황임

○ 이문규 DAS 종합건축사무소 건축사

- 건축사 충남협회 등에 문의한 결과, 16일자로 충남도에서 협회로 협조요청 공문 시행이 되었다고 하며, 아직 일선시군 협회까지 도의 공문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축산협동조합에서 몇 개 건축가랑 MOU 등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영민 차장은 MOU는 아니고 할인 요청 수준),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할 듯
- 감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임
- 설계비 절감 등을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하는 연간 단가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1~2개 건축업체를 선정하여 일괄로 어느 정도 단가에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 필요
- 지자체 마다 다른 무허가축사 적용 기준을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통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질의응답 내용 및 토론요지 전문

○ 질의응답 내용

발언자	질 문	답 변 문원탁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주민 1	- 우리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심에 농식품부의 역할이 큼, 그 이유는 정부에서 아무리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음 - 농가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해야한다고 봄 그래야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어제 차관주제로 영상회의를 했던 부분도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으로 왜 지연이 되고 있는가, 담당부서관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건축 부서, 환경부서나 축산부서나 전부 회피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런 부분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기 위해 어제 회의때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음,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문조치도 할 수 있음
손경찬	- 무허가축사라는게 어떻게 보면 몇 십년전부터 내려오는 비가림시설인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적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지금이라도 적법화가 아닌 양성화 쪽으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설계비 자체도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한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그리고 설계비도 최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함. 플러스하여 감리비까지 있음. 감리라는 것은 잘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확인하는 것인데,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감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일반농가들이 2-3년후에 걸리면 폐쇄하겠다. 이런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축산은 무너질 것임 - 지금은 우리가 남의 일 같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생사가 오고가는 일임. 몇 십년동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감리비, 설계비 등을 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셔야함 - 관리업체에서 이리저리 떠밀고 있으며, 상담창구도 없음 -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전에 양성화로 변경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달라, 감리비나 기타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달라, 있는 건물에 무슨 감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결해주셨으면 함	- 국토부, 환경부를 꼭 불러달라한 이유는 농식품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앙부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겠음 - 환경부에서는 규제하며, 국토부는 건축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을려고 노력하고 있음 -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2	- 소규모 농가는 100㎡미만은....	- 소는 100㎡ 미만, 닭 200㎡미만

발언자	질 문	답 변 문원탁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규모들은 절차가 어려우니.. 4년까지 하고 폐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이문제가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으로 자금을 많이 투여하여 해택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소규모들은 절차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가 있음. 그런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문제가 심각하게 규제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은 행정처분대상이 되지않음 배출 시설의 신고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 - 2024년도에 포기한 농가들이.. 우리 축산업의 존폐가... - 저희는 많은 농가들이 법안에 들어올수록.... - 아까 설명했듯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해 드린다는 것이... 빨리 구성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들을 찾아가고 접촉하여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며, 그 대상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함 대규모농가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진행할 것임
주민 3	- 낙농같은 경우에 아산시에 100여 가구가 있음, 대부분 고령화임 10-20년 사이면 다 접을 농가임. 소규모농가는 겨우 밥먹고 사는데 몇천만원을 드려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 - 안걸리는 농가는 10%로도 안 될 것임. 대농가는 후계자가 있다면 계속 해도 되겠지만 10년이면 접을 사람들이 몇천만원 투자해서 하겠는가 - MB정부에서는 소고기 협상하면서 그 당시에 선진화법을 만들어놓아서 축사를 접게 하는게.. 이건말이 안됨. 농식품부에서 고생을 많이함, 제가 봤을 때 축사가 무너질까 봐 열심히 하시는데.. - 외국에서는 몇 천마리 방목해서 기르는데 한국에서는 유별나게 규제함 - 환경문제 공감함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소 냄새는 50m이상을 벗어나지 않지만, 돼지 냄새는 멀리가는데.... 마트갔더니 이게 소똥냄새다 이거다. 환장하는 일이다.. 물론 농가가 깨끗하게 해야하는 것은 맞는 것임 -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함	- 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음 - 그렇지만 모든게 법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 축산업의 방향은 냄새안나는 깨끗한 축사운영이라고 생각함 - 언제까지 악취다 등등 민원이 많이 있다. 힘드시겠지만 그 방향에는 같이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주민 4	- 가설건축물 때문에 질문드림. 가설건축물이 축사 같은 경우에 허가낸 것이 1000평인데 그럼 가설건축물 1000평을 다 허가해줄 수 없다고 함 이영민 차장님이 말씀하신	- (김응규의원답) 간이축사관련하여 아까 농식품부에서 설명했을 때 100%로 가능한 것으로 설명이

발언자	질 문	답 변 문원탁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것처럼. 1000평을 내야하는데 시에서는 700평만 해줄수 있다고함. 아산시 조례가 있느냐. 알아봤더니 조례도 없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야한다 해서 저희도 지금 허가를 못내고, 설계는 다 끝났는데 못하고 있음. 그리고 또 100%못해준다고하면,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넓게 해놓았는데. 그 이유는 비오는 날 밭에 인분이 묻을 수 있어서.. 비가오면 그땅 밟으면 신발에 인분이 묻을 것이고, 거기에서 밖으로 흘러나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음. 만약에 100%해줄수 없다고 하면 다 뜯어야함. 그래서 저는 100%로 다 해주셨으면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건설국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시군 건축과장,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에게 회의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여 축산농가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관내 사슴목장 전담 설계 사무소 직원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퇴비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현재 아산시 환경보호과에서 퇴비사 관련하여 기준적용이 있어서 축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을 2M 이상으로 하게끔 환경보호과에서는 하고 있음. 거기다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테두리를 20CM 턱을 올려서 비가 올경우에 분뇨가 넘치지 않도록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축종에 관계없이 옹벽을 똑같이 쌓는 것이 아니고 사슴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겠음. 사슴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쌓지않아도 충분히 퇴비사로서의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며, 환경법에 따른 퇴비사 기준에도 퇴비사 벽기준이 쌓아 두었을 때 분뇨가 옆으로 흘렀을 때의 압력을 견디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인근지자체 각지자체 별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슴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며, 옆 당진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음. 그이유가 추후 나중에 준공후에 블록으로 했을경우에 블록을 다 부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옹벽으로 하는것임. 이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 판단이 필요함	
주민 5	- 퇴비사 관련한 질문 - 아까 가축사 시설로 본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산시에서 지금은 5M떨어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부대시설로는 볼 수 없나?	- (이영민 차장)국토교통부에서 질의회신에 퇴비사는 축사로 보라고 나와있음. 여기 차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놓았음. 국토교통부에서 퇴비사를 부속시설로 하여 면제를 하라하면 괜찮은데, 퇴비사도 축사다라고 나와있어서... 이것은 위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다보니 각 시군에서는 고칠 수 없음.
농민청년	- 기존축사가 허가가 내려있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단 부족하다보니 가축사육제한거리가 200M이다보니 걸려있음. 합법적인 절차로 증축이 어려움. 그래서 타지도 이사를 가려도 하는데 시청에서는 신축에 대해서는 10개	- (김응규 의원)법 외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부분은 갖추지 않아도 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하는

발언자	질 문	답 변 문원탁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가 넘은 과들이 서로 협의하에 되냐 안되냐가 결정이 되는데 하자가 없다고함. 그런데 동내의 민원을 해결해야지 신축을 해주겠다고함. 그래서 그럼 빨리 행정심판을 받게 해달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사갈 축사는 시에서는 계속 아무런 답변없이 계속 기다려라하고, 재심사해야한다하고.... 축사하는 것이 죄인인 것 같음. 소키운다, 돼지키운다고해서 다른 축종을 키운다해서 동내에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동내에 행사 참여해도..... 기존축사에서 하려고해서 동내회의를 통해 사정해봤지만 봐줄만큼 봐줬다. 차갑게 대하면서 나가라 하니.. 타지에서도 안된다 하니.. 좀..	거 아닙니까?
	- 알고 있음. 그런 상황을 시에 가서 이야기 했지만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함. 동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안된다...	- 그런 것은 기초지자체장, 시장, 군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함. 이것은 민원으로 담아서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음.
신창 축산 계장	- 2006년도에 아산시에서 양성화 추진을 해서 지자체에서 사진도 찍어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시에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양성화 추진이 안된다며, 합법화로 말을 바꿨음. 이게 농민 잡아먹는 정책이지 이게 뭐니까? 앞으로 강력히 양성화를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나왔던 말이 한우는 200M, 젖소는 300M로 제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부분이 1KM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제한한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또 금방 법을 바꿨다는 것이 그 원인을 이야기 해달라. - 처마는 6M는 봐준다고 하는데 그럼 6M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앞으로 낙농하기 점점 힘들.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양성화로 해주시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야기해야할 것 같음	- (손경찬 지부장) 여러분들이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이 있음. 이 문제에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들 뭔가 농가를 위해서 해줬으면하는데 여기서 답을 해줄수 있는 분이 없음. 건축과에서 만나오고, 환경과에서도 만나오고,, 아산시는 더 하고.. 저는 좌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음. - 다음에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연구모임을 더 확대하여, 도과장님, 국장님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함. 아산의 축산과 두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결정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다음에는 연구회를 확대하여 도에 결정할수 있는 그런분들과 토론을 하며, 이야기 했으면 하는 바램임
김응규	- 좀전에 손경찬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질의 응답도 받고 그 래야하는데 사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건축, 환경, 축산, 산림 다와서 국장들이 앉아	

발언자	질 문	답 변 문원탁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도의원	있어도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이 연구모임의 취지는 여러분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듣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휘부에 전달을 하여 이런문제를 다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전달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중점사항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무허가 축산 농가 분들에게 홍보를 하여 최소한으로 축산업에 계신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양질의 좋은 환경에서 후대까지 물려줄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하고 있음. 이 자리에서 우리 축산인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도에 전달을 하여 지사까지도 알수 있게하며, 부지사와 한달에 한번씩 영상회의를 하니깐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함. 그런 것을 하기위해 이런 모임을 하고 있으며, 제가 이 모임을 3차 회의를 하고 있음. 다음번에는 결과물을 채택을 하는데 그전에 현장방문을 하게 됨. 관련 무허가 축산농가를 저희들과 도의원들, 해달부서장과 함께 현장방문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됨. 그때는 여러분들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적법화에 따른 시설비용 부담이 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적법화를 위해 도비를 5억1000만원을 지원해줬음. 충청북도도 시군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충청남도도 적법화를 위한 재정, 행정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함. - 여러분의 이야기가 적법화.. 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로 남아 있는 것인데 적법화 하려면 돈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알고 있음. 정부도 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 적법화를 최소한 법을 완화시켜서 양성화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축산인들이 법을 여겼으니 2018년3월 이내로 축산업을 적법화 문제로 그만둬라 이렇게 막으려는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든 소규모농가든 영세한농가든간에 좋은 환경에서 주민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당당하게.. 아까 후계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우리 충청남도는 무허가축사를 어떻게하면 최대한으로 어떻게든 법을 완화시킬것인가. 우리 연구모임도 그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문규 건축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서마다 의견이 다 다름. 이러다보니 합일점이 없음. 이렇게되면서 아픔을 느끼는 분들은 우리 무허가축산농가들임. 이런 것은 연찬회를 통하여 강하게 시장군수가 할수 있도록, 시장군수는 민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 그럼 누구를 시키냐면, 부시장, 부군수를 통하여 이 의견을 강력하게 하여 서로 핑퐁하는게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축종별로 회장님들이 계신데, 의견을 들어서 도에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에 전달되어 이번기간내에 무허가축사가 최소비용으로, 최소의 고민으로 적법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 토론요지

토론자	내 용
손경찬	-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이면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농축산식품부 사무관님 발표내용을 보면 축산농가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십년동안 비가림시설을 만들어서 가축을 사육해온 농민들의 관행을 범죄자로 몰고, 적법화를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적법화가 아닌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지금까지 국가에서 단속도 안하고 방관만 하다가 적법화를 하라고하니 저희 농가에서는 황당함. 도 축산과 팀장님의 대응방안, 전형률사무국장님의 대응방향을 들으시면 알 수 있드시 건축, 축산, 환경과가 합심해서 도와줘도 쉽지 않은데 각 부서별로 떠넘기고..법리해석도 다 각각이고, 갈때없는 농가들은 건축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다보니 모든 것을 건축사하는것처럼 설계비도 최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나오고, 기존의 있는 건물을 감리까지한다고 하니.. 농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를 위하는 적법화사업이 아닌가 싶음. 기존의 축사를 양성화로 전환시켜주길 바람, 정 어렵다면 건축비, 감리비를 절감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함 - 여러분을 위한 자리니까 많이 참석해주셨으면함.
백충현	- 축산단체가 조직 된지가 근 10년이 넘었음. 적법화는 중요한 문제임 - 축산단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함. 축산단체의 활동이 저조함. - 모든분들이 아시겠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형황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불과하고 아산시에서는 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돼지, 닭, 오리, 등 800m에서 2km로, 한우, 낙농, 사슴 등 200m~300m에서 1km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음. 오늘 축산단체에서 임원들 협의가 있는데 우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임. 최대한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여러분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림
김택수 충청남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전에 축사 짓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갖혀져야할 부분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법도 바뀌고 제도적으로 바뀌다 보니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음 - 축산 농가들이 농촌에서 보면 사회적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사회의 리더로서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 경제적으로 봐도 농업적으로 보면 소득도 다른 품목들보다 축산하시는 분들이 더 나음. 그런면에서 적법화를 볼때에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쉬운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음 하지만 다 함께 문제점, 어려운점을 풀어가면서 법적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영민	- 계속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으셨으며,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가 많으니 저는 아산축협, 아산시와 관련된 설명을 드릴려함 - 가축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명자체도 어렵고 들으면 들을수록 생소한데 이 법률이 2015년에 시행이 되었음. 시행이 되어서 처음에 진행할때에는 양성화로 말이 되었는데, 양성화로 가다보면 신축하는 분들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돈을 내고 적법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하여, 적법화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5년 12월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아산시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6년

토론자	내 용
	에 조례개편을 위해 아산축협과 협의회 회원님들, 조합원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음.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조례개편이 간단한 것이 아님. 축산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건축과, 환경보존과, 허가담당관실, 축산과 이 4개의 부서가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임. 그래서 문제점을 돌출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 -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거리, 아산시는 5m로 되어 있었음. 이 부분을 완화시켜 달라하여 1m로 줄여놨음. 지금조례가 개편되는 것에 있어 1차, 2차로 나누어서 개정을 했는데 1년 반이 걸렸음. 딱 한부분만 변경하였음. 수 없이 많은 회의를 하였지만 그 계산하는 것에 있어 1년 3개월이 걸렸음. 2018년 3월까지 1년도 안 남았음.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 순탄하게 진행될지 너무 의문사항임. 저는 실무자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가장 답답한 부분을 말하는 것임. 조금아까 축산단체에서 말씀하셨던거처럼 축사 거리 제한있음. 아산시는 한우200m, 젖소300m, 기타 800m였는데, 아산시의회에서 개정발의가 나왔는데 한우1km, 기타 2km임. 어제 컴퓨터로 확인해보니 아산시에에서 축사 할 수 있는 곳이 없음. 기존의 축산하시는 분들은 관찮지만, 지금 민원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법에 맞춰서 신축을 하려고해도 법으로 모든 것을 막아 놓았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산축협에서는 시의회에 부결시켜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함.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목잡지는 말아달라. 이 말씀드리는 것임. 제가 현장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것임. 허가담당관실, 건축과, 축산과 왜 한목소리를 못내는 겁니까? 조례에도 없는거.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교육받으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허가담당관실에서 하는 말이 가설건축물 50%만 인정을 해준다고 함.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교육받으셨잖아요. 가설건축물 건폐율 제외. 수십 번을 설명드렸지만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림. 퇴비사 신축을 해야하는데 5m를 떨어뜨려야 한다고함. 퇴비사가 축사입니까? 축산관련시설물임. 축사는 1m 띄었는데, 퇴비사를 5m띄어서 지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 공무원분들이 계셔야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무엇이나면 축산악취,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겠지만 거기에 선입견이 심한 것 같음. 이런 부분을 완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김응규 의원	-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박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부분인데 굉장히 완화를 시켰는데, 그래도 축산농가에게는 벽이 높음. 건축 설계비, 감리비 등..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임
이문규 대표 (건축사)	- 지금 회의를 하는 도중에 충남 협회 등 이곳저곳에 알아봄. 이것을 왜 일선시군에 전달이 되지않았나.. 건축사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음. 지금 확인해보니까 16일자로 충남도에 협회에 협조요청 문건이 왔음. 그렇게 되다보니 아직까지 아산시 건축협회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음.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 축협쪽에서 몇 개 건축가랑 MOU를 체결한건가?
이영민	- MOU체결한 것은 아니었음. 처음에 건축사 축산단체협의회로부터 두곳 건축사를 추천을 받았음.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 건축설계비라는게 공산품이 아님으로.. 예를 들어 정해져있는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80원에 해주세요. 조합원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협상이 되텐데 이 모든게 가격이 다름. 그당시 MOU체결은 하지않고 다른분이 받는 금액에 평균이하로 받아달라 그런식으로 진행이 되었던부분입니다.

토론자	내 용
이문규 대표 (건축사)	- 제가 오기전에 알아 보았더니 이게 3곳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 설계 사무소에서는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그려야함. 저희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음.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그리기 쉬움. 이미건설되어있는 건물을 지을려면 저희가 일일이 다 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음. 현장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리인데.. 감리는 사실은 건물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감리는 필요없을 수있음. 감리가 어떤문제가 있는가하면. 이런 준공되어 있는 건물에 다 지어질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준공되어도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 하자가 발생했다, 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감리자가 책임을 짐. 이게 추인허가라고 해서 법상으로 감리를 선정하게 되어있음. 이게 만약에 법에서 감리안해도 된다고 하면 안해도 됨. 축사라고 해서 전기가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감리에서 구조관련하여 저희도 회의를 해야함. 저희가 법에서 정해져 있어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설계비가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가는것임. 저희가 앉아서 돈을 버는게 아니라 현장가서 현황조사하고, 도면 작성하고.. 이러다 보니 비용이 발생함. 사실 축산업계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그렇게 비용이 많겠는가 하시겠지만 그게 저희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함. 아까 이영민차장한테 질문한 이유는 지금 충남도에서 충남 건축사협회로 공문이 왔음. 이제 시 협회로 연락이 올것임. 아산시 협회에서도 다시 한번 회의를 논할 것임. 제가 볼때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음. 흔히 국방부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듯이 한업체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축산인이 같이 합쳐서 어느곳을 지정하여 대신에 단가를 얼마까지 해달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다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방법이 있을수 있음. 저희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정을하여, 비용부분은 다시 공지가 있을 수 있음. - 이거는 법상 문제임.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는 축사임. 이것이 퇴비사를 축사로 보면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퇴비사는 국토부에서 나온 것이 축사로 하라고 나와있음. 어쩔 수 없이 아산시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곳도 적용할 것임. 그것도 그거지만, 간이 운동장, 간이축사, 퇴비사 이런 면적 규정은 충남의 각시군마다 다 다름. 천안이 적용하는 것이 다르고 서산 당진 다 다름. 6개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충남의 축사님들이 다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음. 이것은 충남도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감사아닙니까? 충남도에서 토의를 하여 충남은 이렇게 가결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누가 감사를 오게 된다고 해도 시군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아산시에 들어가서 상의를 한적이 있음. 아산시에서도 알아보니 각시군에 알아보니 어떤곳은 어떻고 어떤 곳은 이러니, 우리도 최소한으로 감사에 대비하기위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것은 충남도에서 정책을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김택수 충청남도	- 이문규 건축사님께서 각시군이 다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환경, 건축, 축산이 협의를 하여, 조만간에 담당자들 일괄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눈높이를 맞추도록 하겠음. 담당자가 다르다고해서 시군이 다르다고 하여, 절차가 달라서는 안됨. 분명하게 법은 한가지임. 답은 한가지여야함. 시군, 담당자가 다르다고해서 답이 여러개면 옳지 않다고 생각함. 이부분은 건축부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눈높이를 맞추겠음.

3) 회의사진, 관련기사

(1) 회의사진



(2) 관련기사

충청매일

☐ 로그인하기
 ☐ 회원가입


 woonge100@korea.com

충남지역 소·돼지·닭 등을 키우는 1만7천396호의 축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배출시설과 건폐율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7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응규(아산·사진) 의원이 좌장을,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사무관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택수 도 친환경축산팀장과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문 사무관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사 6만190호 중에서 배출시설 및 건폐율 등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2천615호(4.3%)에 불과하다. 1만2천963호(21.5%)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축사는 무허가 상태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만7천396호 중 무허가 축사가 8천523호(49%)에 이르렀다.

문 사무관은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위반, 담당부서 간 협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진과정상 주요쟁점이 되는 부분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점검·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연내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 중 70% 이상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택수 친환경축산팀장은 "축산농가의 위기의식이 약하고,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규모·고령화 축산 농가의 경우 적법화에 대해 소극적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및 설계사 운영 강화를 통해 적법화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 농림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인쇄하기

닫기

충남도의회, "소·돼지 등 축사 절반 가량 무허가...적법화 서둘러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제도개선 불구하고 관계 법령 위반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대 등 점검·관리시스템 관리해야

| 입력 : 2017-05-17 10:44 | 수정 : 2017-05-17 10:44

아주경제(내포) 허희만 기자 =충남지역 소·돼지·닭 등을 키우는 1만7396호의 축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배출시설과 건폐율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7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응규 의원(아산2)이 좌장을,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사무관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택수 도 친환경축산팀장과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문 사무관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사 6만190호 중에서 배출시설 및 건폐율 등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2615호(4.3%)에 불과하다. 1만2963호(21.5%)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축사는 무허가 상태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만7396호 중 무허가 축사가 8523호(49%)에 이르렀다.



4. 제4차 연구모임 (현장답사)

① 제4차 연구모임 개최계획



2017. 9. 26 (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현장답사 개최계획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현장답사) 개최

□ 전문가 초청 교육 개최 목적

-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및 관계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

□ 개 요

- 기 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 때 · 곳 : '17. 9. 26(화) 10:00~12:40/대유목장, 와우목장
- 참 석 : 32명(연구모임 회원 21, 직원 등 기타 11)

□ 진행흐름

※ 세부일정 및 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내용	진행방법	비고
09:10 ~ 10:00	50'	▸ 이동 (충남도청⇒아산시농업기술센터)		의회 버스 이동
10:00 ~ 10:10	10'	▸ 무허가축사 현황 보고 (충남도, 아산시)		충남도 및 아산시 축산과 담당자
10:10 ~ 10:30	20'	▸ 이동 (아산시농업기술센터⇒와우목장)		의회 버스 이동
10:30 ~ 11:00	30'	▸ 현장방문 및 인터뷰 (아산시 와우목장)		김응규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11:00 ~ 11:40	40'	▸ 이동 (와우목장 ⇒ 대유목장)		의회 버스 이동
11:40 ~ 12:10	30'	▸ 현장방문 및 인터뷰 (아산시 대유목장)		김응규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12:10 ~ 12:40	30'	▸ 이동 (대유목장⇒아산시농업기술센터)		의회 버스 이동
12:40 ~		▸ 마무리 및 오찬		

□ 주요 회의 안건

○ 무허가축사 현황 보고

- 보고 1 :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대응방안

충청남도 친환경축산과

- 보고 2 : 현장방문 대상 축사 관련 추진 상황보고

아산시 축수산과

○ 현장방문

- 현장 1 : 와우목장(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와신길60번길 12)

대표 : 손경찬 지부장 / 한우

- 현장 2 : 대유목장(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317번지)

대표 : 정혜경 사장님 / 한우

※ 아산시 윤기중(축수산과 축산행정팀)

○ 현장 인터뷰

- 축사 무허가 실태 및 적법화 추진 현황 조사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정규재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김기웅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이원행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장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김경태	한돈협회 아산지부장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강정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기타	유예나	충남연구원 연구원	

2 제4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보고



2017. 9. 26 (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현장답사 결과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현장답사) 결과보고서

□ 개 요

- 때 · 곳 : '17. 9. 26(화) 10:00 ~ 12:00 / 대유목장, 와우목장
- 참 석 : 150명 이상(연구모임 회원 21, 충남도민, 직원 등 기타 5)
- 회의내용

보고 1)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2) 현장방문 대상 축사 관련 추진 상황보고

현장답사) 대유목장, 와우목장

□ 참석자 명단

- 충청남도 도의회
 - 김응규 도의원, 김명선 도의원, 김문규 도의원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회원
 - 백충현 회원, 서석천 회원, 지덕환 회원
- 기타 : 충남도의회 사무처, 충남도청 및 아산시 관계자, 충남연구원

회의결과

□ 와우목장

- 실제 소들이 머무는 울타리 안 축사시설이외에 나머지 부대시설 면적도 포함해서 퇴비사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 지붕 등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가설건축물 대비 퇴비사 증가로 인한 현실성 부족 문제
- 사육두수가 아닌 부지 면적 대비 퇴비사 비율 인정 필요성 여부
- 적법화를 위한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중 일부에 대한 지원 여부

□ 대유목장

- 2개의 축사가 마을진입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 되고 있으면서, 별개의 퇴비사 설치는 축산농가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
- 관리사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2012년 이전 말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축사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참석현황 및 회의사진

(1) 참석현황

구분	성명	소속	참석여부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석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석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미참석
	김성겸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미참석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미참석
	김기웅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미참석
	이원행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미참석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장	참석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미참석
	김경태	한돈협회 아산지부장	미참석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참석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참석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미참석
	강정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미참석
기타	유예나	충남연구원 연구원	참석

(2) 회의사진



(3) 관련기사


[인쇄하기](#) [창닫기](#)

conqlee@hanmail.net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현장활동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의원)은 26일 아산시 일원 대유목장과 와우목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모임이 분석한 무허가축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총 1만7383호의 축사 가운데 8189호(47%)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우와 젖소 등 축산 농가가 7119호에 달했으며, 돼지농가 265호, 닭·오리 등 양계장이 226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군부서마다 건축과 환경 등의 규정 및 법 해석이 상이하다"며 "건축조례가 지난 6월 대부분 개정된 만큼 적법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농가 역시 적법화 추진 시 절차의 복잡함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서천축현의 일괄상당 및 접수, 일괄처리 사례 등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올해 말까지 5730호(70%)에 해당하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 금강일보

인쇄하기 | 댓글달기

홈 > 뉴스 > 정치 > 충남도정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 현장활동

2017년 09월 26일 (화) 16:22:48

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의원)은 26일 아산에 있는 대유목장과 와우목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다.

연구모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도내 1만 7383호의 축사 중 8189호(47%)가 무허가로 적법화 대상이다. 한우와 젖소 등 축산농가가 7119곳, 돼지농가 265곳, 닭·오리 등 양계장이 22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적법화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군 부서마다 건축과 환경 등 규정은 물론 법 해석이 상이하다는 것"이라며 "건축조례가 지난 6월 대부분 개정된 만큼 적법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도 적법화 추진 절차의 복잡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천축협협의회 일괄상담 및 접수, 일괄처리사례 등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Ⅲ. 지원방안 연구보고

1. 연구의 개요
2. 충남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3.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점 및 주요내용
4. 충남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 구상



제3장 지원방안 연구보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 강화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임¹⁾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인한 지역 축산업 어려움 가중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적법화 대상농가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위해서는 개별 농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또한 법규 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상황임
- 지자체별 지원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관련부처가 연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현실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충남 지역의 사육농가는 총 17,388호이며, 이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이 필요한 농가는 8,189호로 전체의 47% 수준에 달하고 있음²⁾

1)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p.1, 2015.11

2) 충청남도 축산과, 도시군축협·관계기관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점검회의 자료, p.2, 2017.8

- 축산업은 지역 농업의 근간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저촉되는 개별 농가를 방치할 경우, 많은 지역에서 축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충남도 및 지자체에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2) 연구의 필요성

■ 개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지원 정책 필요

- 지자체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농가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성공적인 충남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도모

- 2018년 3월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시점에 대응하여, 충남 무허가축사에 대한 최대한의 적법화 도모
- 이를 위한 충남도 및 도의회, 지자체 간 연계협력 기반 마련

3) 연구의 목적

■ 충남 무허가축사 현황파악 및 개별 농가 인식 제고

- 충남지역 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축종별·유형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무허가축사 관련 중앙정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과 설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개선과제 도출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방안 도출

- 개별 농가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도출
- 특히, 지자체 모두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도출

2. 충남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1)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

- 충남도 내 축사는 17,383개소이며 이 중 적법화 대상은 8,189개소로 전체의 47.1%로 나타남
 -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592개소로 전체의 7.2%에 불과함
 - 적법화를 위한 교육은 총 91회, 1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는 2,199개소로 분석됨

시·군	사육농가	적법화 대상		교육 (회/명)		상담 (누계)	추진중	완료(%)	고발 조치*
합계	17,383	8,189	47.1%	91	11,166	9,597	2,199	592(7.2)	18
천안시	954	565	59.2%	10	820	320	235	61(10.8)	6
공주시	1,951	803	41.2%	6	1,290	920	274	23(2.9)	
보령시	1,179	672	57.0%	7	850	700	200	28(4.2)	4
아산시	819	615	75.1%	3	817	315	230	70(11.4)	
서산시	1,509	624	41.4%	4	890	998	174	30(4.8)	3
논산시	867	358	41.3%	10	667	1,139	215	34(9.5)	
계룡시	16	5	31.3%	2	5	5	1	0(0)	
당진시	1,511	830	54.9%	4	944	1,624	35	97(11.7)	2
금산군	366	162	44.3%	2	189	300	31	11(6.8)	1
부여군	1,348	584	43.3%	3	670	334	67	20(3.4)	
서천군	574	283	49.3%	11	1,430	322	263	15(5.3)	
청양군	971	673	69.3%	3	630	450	140	8(1.2)	
홍성군	2,496	625	25.0%	6	641	670	54	129(20.6)	2
예산군	2,302	1,045	45.4%	13	923	1,045	100	35(3.3)	
태안군	520	345	66.3%	7	400	455	180	31(8.9)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도·시군·축협·관계기관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점검회의 자료, p.25, 2017.8

2)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구성현황

- 충남도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이 총 47개가 구성·운영 중에 있음
 - 이를 활용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설계사를 지정하여 지역 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감리 등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보령시 등 총 6개 지자체로 분석됨

시·군	추진단구성[부서/직렬(인원)]						설계사 지정	T/F팀 구성	비고
	계	축산	건축	허가	환경	산림			
계	47	16	11	4	15	1	지정(6), 미지정(9)	없음	
천안	3	수의(1)	시설(1)		환경(1)		-	-	
공주	4	수산(1)		녹지(1)	환경(1)	녹지(1)	-	-	
보령	3	농업(1)	시설(1)		환경(1)		지정	-	
아산	3	농업(1)		시설(1)	환경(1)		-	-	
서산	3	농업(1)	시설(1)		환경(1)		지정	-	
논산	3	농업(1)		시설(1)	환경(1)		지정	-	
계룡	3	농업(1)	시설(1)		환경(1)		-	-	
당진	4	농업(2)		시설(1)	환경(1)		지정	-	
금산	3	수의(1)	시설(1)		행정(1)		-	-	
부여	3	농업(1)	시설(1)		환경(1)		-	-	
서천	3	수의(1)	시설(1)		환경(1)		지정	-	
청양	3	농업(1)	시설(1)		환경(1)		-	-	
홍성	3	농업(1)	시설(1)		환경(1)		-	-	
예산	3	농업(1)	시설(1)		환경(1)		-	-	
태안	3	농업(1)	시설(1)		환경(1)		지정	-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도·시군·축협·관계기관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점검회의 자료, p.26, 2017.8

3) 무허가축사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현황

(1)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2014년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이전에는 227건에 불과하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014년 이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2014년 이전에 비해 이후가 210건 정도 증가하였음

- 시·군별로는 당진시가 110건, 홍성군이 38건, 천안시가 32건 증가하였음
- 반면에, 서산시 30건, 서천군은 5건, 보령시·아산시 4건씩 감소하였음

○ 부과금액도 2014년 이전에는 522,438천원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932,033천원으로, 409,595천원이 증가하였음

- 건당 부과금액도 건당 2,872천원에서 3,229천원으로 증가하였음

구분	합계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증감		부과건수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합계	664	1,454,471	227	522,438	437	932,033	210	409,595	2,872	3,229
천안시	44	93,848	6	36,743	38	57,105	32	20,362	6,124	1,503
공주시	70	86,243	24	24,352	46	61,891	22	37,539	1,015	1,345
보령시	38	120,450	21	45,008	17	75,442	-4	30,434	2,143	4,438
아산시	26	191,583	15	45,132	11	146,451	-4	101,319	3,009	13,314
서산시	66	97,446	48	77,372	18	20,075	-30	-57,297	1,612	1,115
논산시	21	25,818	2	1,854	19	23,964	17	22,110	927	1,261
계룡시	7	2,260	4	1,312	3	948	-1	-364	328	316
당진시	160	179,231	25	100,789	135	78,442	110	-22,347	4,032	581
금산군	4	4,369	3	4,146	1	223	-2	-3,923	1,382	223
부여군	15	43,357	2	2,862	13	40,495	11	37,633	1,431	3,115
서천군	7	75,467	6	67,848	1	7,619	-5	-60,229	11,308	7,619
청양군	30	182,977	10	31,990	20	150,987	10	118,997	3,199	7,549
홍성군	150	263,340	56	70,826	94	192,514	38	121,688	1,265	2,048
예산군	25	87,862	5	12,205	20	75,657	15	63,452	2,441	3,783
태안군	1	221	0	0	1	221	1	221		221

출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016.8.22, 내부자료

(2)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고발 현황

- 2010년 이후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고발은 총 254건이 이루어짐
 -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령시는 1건으로 가장 적음
- 2014년 이전에는 총 152건이며, 2014년 이후에는 102건으로 50건이 감소함
 - 시·군별로는 논산시의 감소폭이 35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천안시가 21건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청양군 6건, 금산군 5건, 공주시 4건 등 8개 시·군에서는 적지만 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구분	합계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증감
합계	254	152	102	-50
천안시	45	33	12	-21
공주시	6	1	5	4
보령시	1	0	1	1
아산시	24	15	9	-6
서산시	21	9	12	3
논산시	47	41	6	-35
계룡시	2	2	0	-2
당진시	31	18	13	-5
금산군	5	0	5	5
부여군	24	13	11	-2
서천군	7	2	5	3
청양군	10	2	8	6
홍성군	16	12	4	-8
예산군	2	0	2	2
태안군	13	4	9	5

출처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고발 건수 현황, 2016.8.24, 내부자료

4)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노력

(1)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애로사항

-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 적법화 추진에 대한 복잡한 절차 문제(신축과 동일한 행정절차 필요)
- 건축·환경·산림·개발행위 등 여러 부서 및 관련법 적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미흡

구분	내용
천안시	▪ 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선 건축물 신축과 동일한 행정절차 필요
공주시	▪ 대부분 소규모 축산농가들로 적법화 비용부담이 큼에 따라 적법화 신청 지연 ▪ 국공유지(도로, 하천, 구거 등)에 건축된 일부 축사 소유자들은 철거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에 반발, 고령농가들은 언제까지 가축을 사육할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농가가 적법화 추진 시 절차가 복잡하여 추진에 애로
보령시	▪ 대상농가의 적극적 추진의지 부족(고령화, 소규모) ▪ 적법화 과정이 신축과 동일한 절차로(측량, 설계, 인허가) 문제요인 일사하소 난망 및 경비소요(건당 평균 13백만원 내외) ▪ 축사위치가 상당수 구거, 도로, 산지, 타인 경계 침범 등으로 실질적 추진 어려움 → 기간 과다 소요, 적법화 확신 부존재 ▪ 3개부서(건축, 환경, 축산)관련 규정상 양성화 가능 여건에 대한 입장
아산시	▪ 관리사 최대면적을 33㎡로 제한 현재관리사는 다수농가들이 임시주택으로도 이용함에 따라 면적확대가 절실함. ▪ 구거 등 국유지 침범시 매입후 적법화 가능
서산시	▪ 입지제한구역(학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 존재하는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처럼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적법화 추진 불가[해미면 : 문화재, 군사 보호구역] ▪ 국공유지, 타인 토지 점유에 따른 축사 철거 또는 국공유지 매입 및 사용승낙이 어려움 ▪ 축산·건축·환경·산림 등 여러 부서 관련법 적용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설계·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리 기간 장기간 소요 ▪ 주택 및 창고 등 [불법건축물 + 무허가 축사]와 같은 필지 내에 존재하는 경우, 필지 분할·측량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추진이 어려움

구분	내용
논산시	적법화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사항은 축산농가가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의 적법화 기간 연장발의 관련 보도로 다수 농가의 기대심리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계룡시	축사 이전의 어려움
당진시	- 국유지, 하천, 타인토지 점유에 따른 사용승낙, 매각 등 지연/불가 - 측량, 개발행위, 건축설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인허가 비용 과중 - 입지제한지역(학교정화구역 등) 내 축사 적법화 불가에 따른 농가 애로 - 축산농가 고령화 및 후계농업인 부재로 적법화 필요성 등 동기저하 '18. 3. 24. 이후 행정처분 심각성 인식 부족 및 적법화 기한 도래할수록 적법화 세부지침 완화에 따른 먼저 적법화하면 손해라는 인식
금산군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농가 고령화에 따른 추진 의욕 부족 등
부여군	- 비용문제로 인한 무허가 축산농가가 대다수 존재 - 무허가 축사의 국공유지 점유에 따른 철거에 대한 어려움 호소
서천군	환경부서와 적법화 기능일을 가축사육제한조례 지형도면 최초고시일 11.08.02. 이전으로 협의했으나 다시 환경부서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일 08.10.1. 이전으로 날짜를 조정하려고 하여 혼선 초래
청양군	- 축산농가의 측량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 부담 - 건폐율, 국유지, 하천, 구거 등 현행법 저촉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보도자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2024년까지 적법화 완료 시기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는 농가가 많음
홍성군	- 임야에서 건축이 일시적인 성격인 가설건축물인 경우 지목 변경 불가 - 건축설계사무소(토목포함)에서 적법화 추진을 하고 있으나,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제출 서류의 간소화 필요
예산군	- 농가 설계비용,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부담 및 그동안 수십년간 무허가 운영으로 관습적인 인식부족, 고령영세 농가 적법화 필요성 인식 부족 - 국유지(구거 등), 하천, 임야, 타인토지 점유에 따른 사용승낙, 토지매입, 산지법 저촉 등 적법화 지난 - 주택 및 창고 등 불법건축물이 무허가 축사와 같은 필지 내에 존재하는 경우 필지 분할, 분할 측량 등 절차 이행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해 적법화 지난
태안군	- 고령 및 적법화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부담 가중 - 적법화 시 건축·환경·산림·개발행위 등 여러 부서 및 관련법 적용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도시군축합·관계기관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점검회의 자료, pp.6~24, 2017.8

(2)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조치계획

- 대부분 무허가축사 적법화 독려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컨설팅 추진 강화
- 적법화와 관련한 축협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건축설계사무소 지정·운영 추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측량설계비 등 마련 도모

구분	내용
천안시	▪ 무허가축사 적법화 독려 MMS 발송 및 현수막 게첨 ▪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 지속 ▪ 행정부서(축산, 환경, 건축, 허가) 및 관계기관(축종별 축협) 간 업무협약 등 협조체계 구축
공주시	▪ 적법화 추진단(축산·건축·환경) 운영 내실화 및 홍보 강화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 무허가축사 관련 지역별 컨설팅 추진
보령시	▪ 보령축협과 합동 현장 방문 상담 및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중앙적법화 상담반과 연계하여 농가 컨설팅 지원 ▪ 미 추진농가 안내장 및 SNS문자 수시 발송 계도 촉구
아산시	▪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 개최 ▪ 부시장 주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부서(건축,환경)와 토론회 개최
서산시	▪ 무허가축사 적법화 맨투맨 컨설팅 실시 ▪ 각종 축산관련 교육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및 교육
논산시	▪ 자체 컨설팅(축협, 건축사회 협조)을 완료 및 인허가 조기 접수토록 독려 ▪ 축협·축종생산자단체별 지정 건축설계사무소를 적극 이용토록 축산농가 홍보 및 유형별 지속 관리 ▪ 농가의 적법화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SMS 지속 발송, 현수막 부착 등)
계룡시	▪ 축사 신축이전이 불허된 축산농가(입지제한지역)의 행정심판 진행중 ▪ 월2회 현장방문을 통한 농가 참여유도 ▪ 적법화 가능축사 3개소에 대한 연내 적법화 완료
당진시	▪ 적법화 시 필요 시설(퇴비사, 악취방지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2회 추경) ▪ 적법화 필요성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농가 의식 개선

구분	내용
금산군	▪ 건축조례(대지안의 공지) 개정 입법예고 ▪ 매주 금요일 적법화 대상 농가 축협방문, 일대일 컨설팅 실시하여 서류접수 후 현황측량 등 절차대로 진행 ▪ 관계부서(6개 부서) 팀장, 담당자 업무협조 간담회 실시 ▪ 축협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마련, 적극 추진 중
부여군	▪ 무허가 축사 유형별 분류를 통해 적법화 가능농가 우선 추진 ▪ 부여축협과의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일괄상담 추진 ▪ 농가별 적법화 진행상황을 토대로 측량이상 진행중인 농가에 지속적인 유선연락을 통해 적법화 추진 촉구
서천군	▪ 국토정보공사축협 현황측량 완료 ▪ 건축환경 설계사무소에 성과도 전달
청양군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담당부서 답변에 대한 축산농가 전달 및 홍보
홍성군	▪ 읍면별 순회교육 실시 및 농가별 추진 의향 확인서 조사 ▪ 추진의향확인서를 토대로 건축사(토목포함)협회 및 T/F팀 회의 개최
예산군	▪ 축협, 생산자단체, 건축사회와 연계하여 무허가 축종별, 유형별 그룹화 등 건축사와 협약식 관련 자율적 추진토록 적극 홍보유도 ▪ 매월 축산단체연합회(축종별단체장)와 회의를 통해 지속적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태안군	▪ 축산농가와 개별상담을 통해 적법화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높은 농가는 적극 추진 독려하고, 고령 및 비용부담 등으로 적법화 의지가 없는 농가는 축사축소(100㎡미만), 기간유예(2024년까지)후 폐업 유도 ▪ 무허가축사 담당 공무원 지정(축산팀4명) 및 농가별 상담카드 작성 관리 ▪ 상담카드를 토대로 개별 현지 출장하여 현장 상담 실시 ▪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한 측량 설계비 등 일부지원(예산50,000천원 확보)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도시군·축협·관계기관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점검회의 자료, pp.6~24, 2017.8

5) 지자체 건축조례(대지안의 공지 등) 현황

- 건축선↔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평균 1m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최소 0m에서 최대 3m로 차이를 보임
- 대지경계선↔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평균 0.5m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1~1.5m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은 모든 지자체가 50/100 수준으로 통일되어 있음

사군	건축선↔건축물		대지경계선↔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천안	• 적법화(5m) • 신 축(5m)	• 1m • 1.5m	• 적법화(5m) • 신 축(5m)	• 1m • 1.5m	50/100
공주	• 1,000㎡미만(3m) • 1,000㎡이상(5m)	• 0m	• 1,000㎡미만(2m) • 1,000㎡이상(6m)	• 0m	50/100
보령	• 3m	• 0m	• 3m	• 0m	50/100
아산	• 5m	• 2007.1.4.이전(0m) • 2017.1.5.~2013.2.20.(1m)	• 5m	• 2007.1.4.이전(0m) • 2017.1.5.~2013.2.20.(1m)	50/100
서산	• 3m	• 1m	• 3m	• 1m	50/100
논산	• 500~1,000㎡(2m) • 1,000~2,000㎡(3m) • 2,000㎡(4m)	• 1m	• 500~1,000㎡(2m) • 1,000~2,000㎡(3m) • 2,000㎡(4m)	• 0.5m	50/100
계룡	• 3m	변경계획 없음	• 3m	변경계획 없음	50/100
당진	• 1,000~3,000㎡(3m) • 1,000㎡미만(1m)	• 1m	• 1,000~3,000㎡(3m) • 1,000㎡미만(1m)	• 0.5m	50/100
금산	• 1m	• 0.5m(9월 개정 예정)	• 1,000㎡미만(1m) • 1,000㎡이상(3m)	• 0.5m(9월 개정 예정)	50/100
부여	• 3m	• 0.5m	• 1m	• 0.5m	50/100
서천	• 3m	• 1m	• 3m	• 0.5m	50/100
청양	• 330㎡(3m) • 330㎡미만(2m)	• 1m	• 330㎡(3m) • 330㎡미만(2m)	• 1m	50/100
홍성	• 200㎡미만(1m) • 200㎡~330㎡(2m) • 330㎡초과(3m)	• 1m	• 200㎡미만(1m) • 200㎡~330㎡(2m) • 330㎡초과(3m)	• 0.5m	50/100
예산	• 3m	• 1m	• 3m	• 0.5m	50/100
태안	• 3m	• 0.5m	• 3m	• 0.5m	50/100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도시군축합관계기관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점검회의 자료, p.27, 2017.8

3.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점 및 주요 내용

1)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점

(1) 정부 차원의 문제점

○ 제도개선 미비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환경부 규제 강화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행정처분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폐쇄·가축사육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구성됨

(2) 농가 차원의 문제점

○ 비용 문제

-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적법화 추진 비용
- 농가 당 약 500백만원 소요 예상

○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적용 등 문제

- 지적도 상 타인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문제
- 건폐율(60%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문제

○ 지역사회 이해, 농가 간 형평성 문제

- 지역 사회에서의 축사 확장에 대한 반대
-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주요 내용³⁾

(1)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 건축허가와 신고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건축신고 대상 : 연면적 400㎡ 초과, 증축된 바닥면적 85㎡ 미만
- 건축허가 대상 : 연면적 400㎡ 미만, 증축된 바닥면적 85㎡ 초과

○ 용도 불일치 문제

- 퇴비사 → 축사, 가축용 창고 → 퇴비사로 사용할 경우, 전자는 신고대상, 후자는 허가대상임

○ 소유주 불일치 문제

- 타인의 토지에 축사를 운영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징구 필요

○ 토지 경계 침범 문제

- 축사 부지경계선이 하천부지를 침범한 경우, 축사가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면, 하천점용도 인정됨(건축법 제11조제5항10호 참조)

(2) 가축분뇨 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 관련

○ 배출신고 대상과 관련된 문제

- 한우의 경우 100㎡(약 10마리)은 배출신고 대상이 아님
- 소→돼지로 축종 변경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임
- 한우축사 10동 3,300㎡(1동 400㎡ 이하)는, 동별 면적이 400㎡ 이하로 건축신고 대상이며, 축사 면적이 3,000㎡ 이상으로 배출시설 허가대상임

○ 주민동의서 관련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시 주민동의서 첨부 필수

○ 사슴과 관련된 문제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2007년)에 의거 다른 축종과 같이 적용됨

3)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 2016. 재정리

(3) 건폐율 초과 관련

○ 건폐율이 초과한 부지

- 건폐율이 초과한 부지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축사를 폐쇄하여 해결

○ 축사가 2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 2필지 이상을 합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산정

○ 타인 토지를 침범한 문제

-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타인 토지를 일부 매입하거나, 침범 축사 제거

○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건폐율 문제

- 당초 용도(농림지역)에서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용도 변경(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로 변경된 경우, 당초 건축허가 부분은 인정되나, 용도 변경 후 증축된 부분은 현 건폐율 40% 적용

(4)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관련

○ 가축사육제한구역 선정 이전 축사 문제

- 가축분뇨법 부칙8조에 따라, 동 법 시행 후 3년 동안 배출시설을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조치 명령 가능 여부

- 지역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일정한 보상이 필요함

(5) 가설건축물 축사 관련

○ 비닐하우스 축사도 가설건축물 대상인지 여부

- 축사용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 대상이며, 연면적 100㎡ 이상이면 간이축사로 축조신고 가능, 건폐율에 미포함

○ 축사 가설건축물 대상 여부

-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지붕과 벽의 재질이 비닐하우스, 천막, 합성수지, 1/2이하 합성강판(지붕)의 경우에만 인정

- 컨테이너는 간이축사로 신고가 불가능하지만, 가축양육시설일 경우는 가능함

(6)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 소규모 축사의 퇴비사 설치 문제

- 소규모도 퇴비사는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전량 위탁처리시는 불필요함

○ 퇴비사의 건폐율 산정 문제

- 퇴비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건축대장에는 등재(연면적과 바닥면적 유효)

○ 공동 퇴비사 설치 문제

- 소규모 축사가 모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7) 이행강제금 관련

○ 조례를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율 적용 가능성

- 지자체 조례로 최대 60/100까지 낮출 수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 이행강제금이 먼저 나온 경우 자진신고서 제출 필요
-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 1~2회 정도 부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부과횟수는 5회를 넘지 않음)
- 가설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대상임
- 축사와 축사 사이 지붕연결 부분도 이행강제금 대상임

(8) 축사차양 및 축사간 지붕연결 문제

○ 건축면적 포함 문제

- 축사 연결부분은 6m까지 건폐율에서 제외(바닥면적과 연면적에 포함)

○ 가설건축물 유무

- 축사가 일반건축물일 경우 연결부분도 일반건축물임

○ 축사 처마의 대지경계선 침범 문제

- 축사 처마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경우, 침범한 부분만큼 끊어내야 함

(9)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문제

○ 농장이 도로에 접하는 기준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물리지 않아도 되나, 건축조례로 지정하는 크기 이상의 축사는 6m 도로에 4m 이상 물려야 함

(10)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 문제) 문제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부지경계선 이격거리 문제

축사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1m~6m,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6m의 범위에서 지역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허가축사 1동과 무허가축사 1동의 과거 법에 따른 이격거리 문제

- 허가축사 1동이 당시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 건물일 경우, 이격거리 강화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물임
- 단, 무허가축사 1동은 당시 건축법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양성화를 위한 이격거리를 적용함

(11) 적법화시 개발행위 허가 문제

○ 축사 적법화 과정 상의 개발행위허가 문제(토지 660㎡ 이상 형질변경 시 심의료 1천만원 이상 소요)

- 건축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4. 충남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 구상

1) 관련기관 연계체계 강화 노력 지속

(1) 민·관 협업 체계 강화

○ 적법화와 관련된 축산·건축·환경·산림 등 관련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

- 축산·건축·환경·산림 등 관련법의 법리 해석 차이로 인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에서의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

○ 충남도 및 지자체 단위의 T/F팀(무허가적법화 추진단)의 구성을 관련부서가 전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더불어 한시적이지만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축산·건축·환경·산림 및 허가 관련 부서 전체가 하나의 추진단으로 구성된 지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는 축산·건축·환경이 참여하고 있음
- 개별 농가에서는 관련부서와 관련법의 적용 및 해결에 대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이들과 관련된 인력과 기구가 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현재 축협 및 농협에서 구성·운영 중에 있는 무허가축사 상담실 및 적법화 추진단 등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및 지자체 단위 무허가축사 추진단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 및 인허가, 종합적인 교육과 홍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자문과 개선방안 협의 등에 있어서는 농협·축협 등의 무허가축사 상담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함

(2) 건축사협회 등과의 연계 체계 강화

○ 충남도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협회 및 건축사사무소와의 연계·협력체계를 보다 공공히 하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는 총괄의 입장에서 충남도 건축사협회와 적법화 지원에 대한 협조요청 뿐만 아니라, 적법화 지원 완료 시점까지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 등과 함께, 적법화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적법화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와 감리 등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와 건축사협회, 지자체와 건축사사무소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별 농가 단위의 접근이 아닌 광역 단위 접근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모색 필요
 - 현재 충남에서는 6개 지자체가 건축사사무소와 연계하여 적법화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나머지 9개 지자체도 조속히 건축사사무소를 지정·운영하여 개별 농가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관련법 제도의 규격화 및 적용기준 완화 지속

(1) 건축조례통일 및 적용기준 완화

-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축조례에 대해 충남도 내에서는 통일화하여 지자체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선↔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평균 1m 수준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0m 혹은 0.5m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있음
 - 대지경계선↔건축물에 대한 기준 역시 평균 0.5m 수준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1~1.5m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 지자체별 건축조례(대지안의 공지 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지자체 간 개별 농가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충남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건축선↔건축물 및 대지경계선↔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일부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0m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 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적법화 대상 및 신축 모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더불어 축사의 면적에 따른 차등화 전략보다는 모든 축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개별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적법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충남도와 지자체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행강제금 경감 노력 지속

- 지자체별 이행강제금은 당초 지자체별로 60~100%까지 차등화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50% 수준으로 전체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음

- 강제이행금은 불법 측사에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 내 측사 중 소규모·고령화 농가에서는 이러한 강제이행금 부과는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
- 따라서, 충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재의 50%를 40% 이하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위반면적×시가표준액 100분의 50×위반내용(100분의 70, 80, 90, 100)× 50%

○ 측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2) 측사차양 등 가설건축물 기준 완화 방안 모색 필요

- 현재 측사 차양은 3m 까지, 측사 간 연결부위 상부 폭은 6m 이내에서 건축면적을 제외시켜주고 있음
-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복도 공간에서 비와 눈 등의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에 대한 한시적인 유예나 별도의 개선 기준 마련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지원 강화

- 현재 태안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측량 및 설계비 지원과 같은 제도를 충남 전체 지자체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태안군의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50개소, 개소당 2백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농가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있음
 - ※ 측량, 설계 등 적법화 추진에 약 13,000천원 정도 소요 예상
- 소규모·고령화 농가가 많은 지역 여건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

남도에서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농가가 적법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개별 농가에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도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정 부분의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충남도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건축사협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남도가 건축사협회, 건축사무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개별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노력도 필요함
 - 개별 농가 단위의 접근을 통한 설계와 감리 등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자체 단위의 접근을 통해,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절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행정에서도 활용하는 “연간단가계약”과 같은 계약의 규모화 방안을 통해 설계 및 감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함
- 이러한 예산 지원을 위해, 충남도에서 특별 예산의 편성이나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4)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건의 필요

-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도 많은 것이 사실임
- 더불어, 충남의 경우 소규모·영세화·고령화 된 축산농가가 많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추진 자체가 생존과 직결된 경우도 많은 편임
-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시점이 2018년 3월로 잔여 기간 또한 부족한 시점으로, 적법화 추진에 한계가 많은 실정임
- 충남도 및 도의회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대한 완료 시점을 연장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충남도 및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시점을 2~3년 연장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유예기간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닌,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향후 조정된 완료시점까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와 절차 이행 노력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소규모·고령농가에 통합화 노력 필요

- 충남에서 상당 수가 존재하는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를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통합하여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폐업 등을 추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신규 축산단지의 조성을 통한 이전이나 흡수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현재의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가 제도적인 문제로 폐업 등을 하게 될 경우, 축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임
- 이를 위해, 현재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의 흡수나 별도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구성운영을 통해,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함

6)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홍보 및 필요성 인식 제고 필요

- 무허가축사의 상당수가 소규모·고령화로 인해 적법화를 알고 있으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할 수 있음
 - 적법화에 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추진 의지 부족
 -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 등의 적법화 필요 시설 설치 미흡
- 이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 등에 축산관련 종사자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소규모·고령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추진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가능성이 미흡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개선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함
 - 더불어, 참여 의사가 미흡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추진단을 활용한 방문과 협조요청,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고령화 무허가축사의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적극적인 추진가능성 검토,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고 필요

7) 축산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이전이나 신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음
 - 축산업은 환경적인 문제, 악취 등을 문제로 지역 내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축산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의 깨끗함, 환경적 영향성의 최소화 방안 노력 등에 대해, 축산업 종사자 만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하는 기회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충남도 및 지자체가 개별 농가와 함께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개별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의 자리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갈등이 심해질 경우, 충남도 갈등관리위원회 등의 중재를 통해 개별 농가의 신축이나 규모화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2015.11
-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워크숍 발표자료, 217.5
-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 자료, 2017.5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식 및 제1차 회의자료, 2016.11
-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 2016
-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응한 개선과제, 워크숍 발표자료, 217.5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016.8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고발 건수 현황, 2016.8
- 충청남도 축산과, 도·시군·축협·관계기관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점검회의 자료, 2017.8
- 충청남도,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현황 및 충남도 대응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217.5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여론·동향, 보도자료, 2017.11